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는 수밖에 없는 절박히 일방적인 이 한계상황에서 인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와 같이 아무 저항 없이 자신을 폭력 앞에 내밀 수밖에 없나.

고문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 힘박기나 모욕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고문이라는 제도적 폭력은 한계상황에서 벌어지고 일상생활의 폭력은 정당방위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의 특징은 엄마자이라는 테 있다. 고문하는 자는 고문당하는 자를 일방적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고문당하는 자의 주체성은 부인되며 단순한 객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인간을 단순한 객체로 취급할 때 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카트의 定命論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그것이 너 자신이 전 타인의 인간에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존중할 것이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 拷問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고문은 인간을 목적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양태이다. 기기에서 침해되는 해석적인 가치는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은 객관적 실존조직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관적 실존조직이다. 그래서 고문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적의무이다.

### 拷問이라는 제도적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먼 우리는 고문이라는 이 제도적 폭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현재 고문을 그치게 할 효과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인류는 그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앰네스티신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실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 拷問의 금지는 정치적 책임

첫째 「인류의 양심에 무학하는 진리를 표명」하는 것이 나. 이것은 인권선언이나 헌법에 고문폐지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인간은 누구를 악물하고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되며 찬양하고 비난도 적이고 비언한 치우나 치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2항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물리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고문금지 규정을 아직 실현에 성취하지 못한 나라는 국제법의 규정인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각 나라의 헌

법에 고문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인류의 양심에 무학하는 진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모든 정부가 고문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비자국가적 헌법제도와 정치윤리를 확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권리분리제도, 헌법제판제도, 인권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등을 통한 국가권력의 동제와 감시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사회계약으로서의 헌법문서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의 어려운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비자국제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이다. 그 정치적 책임은 정치분리에 바탕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는 국민 앞에서 헌법의 준수를 서약한 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의한 헌법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이다. 헌법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대는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에 의한 헌법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로 하여금 고문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자체임을 물을 수 있다. 고문을 한 국가 관리는 형법 제125조에 의하여 처벌하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관, 인원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적자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인간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만 큼 죄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근거를 진드리는 것인가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人道에 반하는 죄」라고도 한다. 죄에는 경중이 있다. 살인, 강도, 방화의 그 어느 죄도 그 절에 있어서 인도에 반하는 죄만 무겁지는 않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비인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앰네스티신은 고문은 고문하는 자를 「야수화」한다고 말한다.

고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짐승의 행위이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때 그 다른 자도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문은 결코 인간의 범죄일 수 없고 그것은 짐승의 범죄이다.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범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리나킬하다. 인류의 양심과 이성이 쟁아울린 문화와 도덕은 애만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이 애만으로 환원되는 역사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 고문폐지운동의 파토스와 에토스는 분명하다.

인간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이다. 양심과 이성과 문화와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애마와 애만이 날무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이다. 그래서 앰네스티신은 「인류의 양심에 무학하는 짐승을 표명하고 이러한 악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문폐지를 위한 투쟁은 인류의 저울 앞에 두고 있는 것이며 그 저울 칠밀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그리나 이것으로서는 고문 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보아, 국민의 대표자인 임법부는 1983년 「침범죄가 중치범에 제4조의 2에 고문을 하여 사람을 치성케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치사케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고문 경찰관은 고문을 할 때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을 자오하고 해야 한다. 고문 경찰관의 고문이 균질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 10년, 또는 무기를 자오하고도 고문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경찰관은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법에 따라 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문은 균질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형사책임은 직접 고문을 한 자뿐만 아니라 그 고문을 시한 자도 저야 한다. 고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 또는 고문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지하지 아니한 상관은 고문죄의 자위 및 부작위의 간접정범이다. 고문 경찰관의 상관은 정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도 함께 저야 한다. 그는 형법상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 투쟁만이 물음을 근절한다

세계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및 직업상의 책임자를 가진 인사 및 조직들이 전 세계적인 고문 폐지운동에 대하여 동동적인 지원을 발휘」하여야 한다. 앤데스 티센인의 마지막 요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문을 인간 세상에서 물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으로 만들고 그 제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건 트는 그의 「영구 평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또는 국가 조직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암마의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그들이 최소한 情性만 가지고 있다면 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는 인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기계조직을 개조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범위 국가의 제도를 헌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나. 인간의 이성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창작품인 그 범위 국가의 헌법제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도는 아무런 실효성도 발휘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사용을 지켜 주는 올타리 구실을 해내지 못한다. 고문을 폐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면

왜냐하면 이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고문을 균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의 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오랜 시일 인간의 모든 기본권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양심과 이성을 대변하는 지성들의 투쟁의 산물로서 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인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 투쟁없이 인권은 소유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권의 투쟁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오랜 시일 인류의 장래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관할 수 만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세상이 빨리 오느라 늦게 오느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투쟁하면 빨리 올 것이고 투쟁 안 하면 늦게 올 뿐이지 결코 영원히 안 올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늘이 준 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성을 찾는 그의 본성을 영원히 점재율하는 일을 것이다. 기대한 리마이어던의 폴리 앞에 하니의 인간은 무력하기 이를 테 없다. 그러나 그 기억할 수 있는 일정한 국가의 힘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도 사람이다.

제도는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제도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된다. 이 방법 이외에 달리 老 족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즉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고문이 헌법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심사리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문이 헌법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심사리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문 폐지운동은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및 직업상의 책임자를 가진 제 인사 및 조직들이 고문 폐지운동에 동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국가를 지키기 끝 만드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복용하고 계십니까?

\*간체독  
\*지방간제기  
\*간기능활성  
\*소화촉진  
\*액상순환촉진

5종 효과의 종합간장약

프로비아를

표준소매가격: 100정 9,900원

O 헌일 药品

위에서 열기한 법 조문들은 고문을 금지하고, 막고, 나아가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이들 규정에 는 유보적인 단서도 없다. 특히 헌법의 제11조 6항과 특가법 제4조의 2항은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 신설된 조문들이다. 고문 근절을 위한 제도 자체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시내에 들이선 이래 지금까지 고문서비스는 한 단없이 야기되어 왔다. 인론에까지 크게 보도돼 세론을 들끓게 했던 高淑鍾부인사건(高時鍾夫人事件), 金時勳사건

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  
9조)

82년), 한일 합섬 이사 金根祖씨 사건(83년) 등은 고문사실이 베일 하에 드리난 대표적인 사건들일 뿐이다.

이들 사건 말고도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9월의 부산 양서소집사건(일명 炮林사건)과 광민사건(일명 전국 민주학생연맹·전국 민주노동자연맹사건 또는 학령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이른바 「부천 경찰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의 당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 크고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무고한 사람을 고문해 살인범으로 조작한 고수종씨 사건, 김시훈씨 사건과 고문을 받다 숨진 김근조씨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83년 12월 31일 특가법에 제4조의 2를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어진 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문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지난 해의 金槿泰씨 사건과 올해의 부천서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목

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무신 케 했다.

反撲問운동이라고도 이를 불릴 수 있는 「고문」에 대한 각계의 대응이 김근태씨 사건과 부천서사건을 계기로 보다 조직화되었다.



# 三五 拷問告發人민운동

文 明 豪

(東亞日報新東亞部記者)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  
(중략) :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6항)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5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인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끊이지 않는拷問是非

성명을 발표해 고문을 규탄하고, 관계기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메모는 단체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내기도 한다.

가족을 대신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재판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당사자의 구속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들 단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인력을 통해 역할을 나누어 맡으며, 힘을 모아 보다 큰 목소리로 항의하고 사건의 내용을 유인물이나 자료집 형태로 정리해 배포하거나 고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갖가지 접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고문운동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특히 김근태씨 사건과 부천시 사건을 계기로 보다 조직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단체의 목적 성격 활동 내용에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과 인권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웅직임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인권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회와 한국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주로 담당했다.

유인물 하나만 만들면 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시절이라 자료로 정하는 일 자체가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같은 인식 아래 일을 했다.

그 이후 NCC 인권위원회가 매년 인권문제 전국협의회와 인권주간에 맞춰 발간해온 자료집들은 이 시기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82년 10월 4일부터 6월까지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82년도 인권문제 전국협의회를 앞두고 NCC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집 「복우과 인권」은 「5·17」 이후 그 시점까지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서다. NCC가 발간한 자료들 중 보기도 물게 「對外秘」 표지를 해놓은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같은 자료를 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국내 반도유스호스텔 출입 10년으로 이 자료집은 I. 「오늘의 현실과 인권」 II. 「사건사례」 III. 「고문사례」

로 되어 있는데, 「고문사례」에서는 고문 사실을 알림으로써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시래 정리의 취지를 밝히면서 고문이 있다고 주장한 9진의 사건을 모아 놓았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받은 것이다. 고문은 바로 아버친 유발의 본성을 파괴하는 죄악 행위이다. 따라서 고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행위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신앙고백이다. 또한 고문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본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고문을 하는 사람의 본성도 파괴한다.

고문이 자행되는 사회는 도덕으로 타락한 사회이다. 그보다 더 타락한 사회는 고문이 자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릴 수 없는 사회이다. 고문이 자행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이다. 그보다 더 타락한 사회는 고문이 자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릴 수 있는 사회이다. 고문을 균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 자신 항상 이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자료집을 바로 이러한 뜻에서 고문을 균형시키고 이명에 더 이상의 고문이 없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 정치적 사건과 「捷問」

제5공화국 성립 이래의 숨한 정치적 사건들 가운데서 고문이 있다고 주장된 어느 사건의 경우도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이 없었다.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나 올 경우 설사 실제로는 고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적극적이고 성실히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고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최소한의 성의 조차 기울이지 않는 채 단순히 없었다고 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경우 그러한 무성의 자체가 고문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증자료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속종 김시훈 김근조 씨 사건처럼 일반 형사 사건인 경우와는 달리, 정치적 사건들의 경우에는 고문 사실이 없다고 하는 주장과 고문 사실이 있다. 두 주장들이 합치점을 찾지 못하면 시동 시에는 갑정의 심연이 자리잡

게 되었다. 디구나 인권의 암흑기인 유신시대에도 그랬지만,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국의 경색이 다소나마 풀리기 시작한 8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보도 조차 되지 못했다.

보도가 안되면 저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다. 관심을 끌지 못하면 어론화되지 못한다. 고문 주장은 자연 많은 경우 가족 친지와 활동이 위축된다. 고문 주장은 자연화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빼앗았다고 시인한 만한 근거가 많을 때만 가능하다.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고 시인한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 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슴 속에 읊어진 하니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풀면 하게 시인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제시되기 전에는 결코 저위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인론이 침묵을 칠지하게 장요당하던 시기에도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된 사건은 물론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정리해오는 일은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위원 저갔다.

이 자료집에서 정리해놓은 「고문사례」들은 김시훈 씨 사건, 고속종 씨 사건, 기태우(종도) 씨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부산 양서조합(부밀) 사건, 광민사 사건, 미스 유니버스 대회 폭파음모 사건, 진대중 씨 사건, YWCA 사건 등이다.

### 제5화국 초기의 사건들

이 종 일 반에 기의 알리지지 않은 기종도 씨 사건은 기씨가 이를 바꿔불희사진에 일부 82년 3월 23일 진라남도 경찰국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송치 돼 교도소에 수감 중 사경을 해마다 전해졌다. 「복우과 인권」이 진재한 기씨의 부인 박유덕 씨의 호소문은, 기씨가 광주사태와 관련해 불순한 인동을 했다는 혐의로 개임범위반죄를 적용받아 1년 2개월간 복역한 후 출감하여 위

케 양증으로 자가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을 균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 자신 항상 이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자료집을 바로 이러한 뜻에서 고문을 균형시키고 이명에 더 이상의 고문이 없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기씨의 사인 규명 △고문경찰관과  
담당교도관 색출처벌 등을 요구했었  
다.

「복음과 인권」은 부산 미문화원방화 사건 광민사사건 김대중씨사건의 경 우에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가운데 고문받았음을 주장한 부분을, 부림사 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중 고문주장 부분들을, 미스유니버스 대회 폭파음모사건의 경우엔 피고인 1명의 상고이유서 중 고문주장 부분 을 각각 전재했으며, YWCA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주장한 「고문시설」을 소개했다.

외에도 84년 초까지의 사건들 중 82년의 군산 오송 회사전, 83년의 서울 야외연합사전 등에서 고문주장이 있었 다. 진자의 경우 친주교 전주교구 정 평회원회가 사건 변론요지, 2심 최후진술, 수감자가족 호소문, 우리 주장(전주교 전주교구 정평회) 등을 제출한 「오송 회 시전의 진상」이라는 지 보집을 만들어 알렸고, 후자의 경우 NCC 인권위가 83년 인권주간자료집 「민생과 인권」에 수사받은 학생들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모여 「해방」

결성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7 이후 민주화운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최초의 단체로서 84년에 결친 많은 재야단체들의 등장이 그 효시가 되었다. 게다가 민청련이 재야 운동권의 진위를 자임하면서 투쟁을 벌여온 히트파워 내세우고 활동학제적 후부터 딩히 꾀 심화에 마리 출범 직후부터 빛 있다.

이 두 사건은 84년 이래 시시히 전개되다 85년 2·12 총선 이후부터 가열일로를 달리온 각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야 웃당과 동당체들이 「탄압」이라고 부르는 단국의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청련을 대하는 당국의 손길이 한층 거세져갔으

수기를  
실었다.

전들은 드물었다.

84년 11월 경희대와 연세대 어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청량리 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진경들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그 가운데 비교적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다.

「오송화사건에 있어서 전주교구 정평위가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건관련자 중 2명이 가톨릭신자라는 사실이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같은 주장은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주장이 앞서 언급된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서도 사건관련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9) 민정당사 노성사전 관련구속학생  
(84·11) 진남 평산군 하남전자 노조간부(85·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방용석 위원장(85·4) 1985. 한국미술, 20대의 힘 전관련작가(85·7) 등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종일부가 그때 그때 신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정 도에 그쳤다.

그러다가 85년 9월에 터져나온 민

주화운동청년연합 전의정 金權泰씨  
고문사건은 그동안의 「고문사건」들과  
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면서 어리가  
지 면에서 「로드 그네」를 마련한 사선  
이었다. 접근태씨사건을 보니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후한 시  
기의 사회상황을 다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전」으로 별도 발표된 서울대 비공개 학생조직 민주위에 관계한 文龍植 군(27 국사학과 3년 휴학)이 8월 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된다.  
문군은 그후 법정과 항소이유서에 서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사실」을 주장한다.

그리고 1 나르 세부드 3월 2일  
청련 사디위 부위원장 李乙鑄씨가  
4 일 엔 진의장 김근태씨가 각각 치안  
본부 대공수사단에 임행됐으며 그  
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2일 사이  
에 모두 6명의 간부들이 같은 곳에  
임행되었다.

김근태씨(39)는 4일 연행되기에 앞서 민청련의장직을 물리난지 2주 일후인 8월 24일 이미 서울 종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의해 체포돼, 85년 8월 10일 있었던 민청련 제5차 촐회의 결의문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에

8월 26일 즉 결심판에 회부, 구류 10  
일을 신고받고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됐다. 김씨는 구류가 끝나는 날  
인 4일 새벽 5시반 이 유치장에서  
출발로 이동된다.

김씨는 9월 7일 구속영장이  
되어 최대구속기한인 20일을 봐 체우  
9월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의  
부인 印在謹씨(34)는 그동안 남편의  
민회는 키녕 소식 조차 들지 못하고 있  
다가 이날 검찰에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검찰청의 시울지점 공안부  
가 있는 5층 복도에서 아침부터 기다  
가 있었다. 끝에 오후 2시반 김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임씨는 다음날 아침 10시 이율호씨  
부인 허정숙씨 구속자와 함께 11층

현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종로구 인지동 기독교회관의 NCC 인권위원회 회 사무실에 모여 항의농성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치안본부에서 고문당한 남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배포, 남편을 만났을 때 보고 들은 사실을 폭로했다.

“: 26일 오후 2시 30분 경찰청 5층 엘리베이터에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남편을 본 순간 반가워 함께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걸음을 재대로 옮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많이나웠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굉장이 달했어! 굉장히 당

들은 이유를 강조하는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다. 번호인은 의견서에서 「번호인들에 대한 기일통지 역시 시민에 의할 필요가 없어 이 번호인들 중 어느 1인에게라도 전화통지를 하면 그 대수에 그들이 기원 명의의 기일통지명수증서를 전성할 것이며 이에 관한 절차상의 항법을 사전에 포기하는 바입니다」라고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김오수판사는 번호인들의 나급한 심정과는 달리 원 청구가 있은 지 열흘 후인 10월 12일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했다.

한편 NCC는 10월 4일 정기 실행 위원회 회의에서 10월 21일부터 27일 까지를 폭력 추방 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 날짜로 NCC에 접수된 인재근씨의 청원을 심의하고 회장단과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달해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 민주화추진협의회도 상임위와 지도위원회의회를 열고 「고두해기」는 우리 국민과 전 인류의 공적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정부 스스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문행

했어!」하며 되풀이 했습니다.

독립신문

9월 4일 이 차례	5. 6일 각각
1차례, 8일, 11일, 13일, 16일,	
20일까지 10여 차례 온물을 봉봉 뮤	
루물 먹이기, 소금물 먹이기 등 갖	
은 고문을 당하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고, 고	
문을 한 날은 밥을 주지 않아 꼬박	
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씩 고문을 가했	

그 정도로 몸이 약해지자 3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은 검찰청 5층에서 4층 대기실까지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친한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남편은 저에게 발뒤꿈치를 보여주었으니다. 것이거진 그의 발꿈치와 별통은 저의 가슴을 매이지게 했읍니다. 웃을 입고 있기 때문할 수는 없겠지만 온몸에도 상처투성이이고 특히 뒷꿈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를 이땅에서 빼고 떠나 우하수민동을 비롯한 제야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친명한다』고 밝혔다. 또 민 청련 노동자 학생구속자 가족 30여명이 NCG 인권위 사무실에서 이날부 터 2주 동안 늘성대 들이가 10일까지 계속했다.

NCC 이우우는 ○ 늘자 ○ 대학 강  
력한 대치를 위해 10월 5일 기독교장  
로회총회 총무 진상근 목사를 위원장,  
금영관 목사를 서기, 조승혁 오충일 목  
사와 이우강씨를 위원으로 위촉, 고  
문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또 국무총리 앞으로 된 항의서가 15일자로 발송됐는데, 이 항의서는 국회의장 국회 국무·법사위원장 내무·법무·장관에게도 함께 노내정으로 28일에는 공개서한이 내무장관에게 발송됐다.

NCC간담회가 열린 14일 천주교 정의구현진국사재단은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회의와 미사를 갖고 고문 및 민주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의 「오늘의 현실을 보고 호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민청련지도위원회도 대책회의를 갖고 항의성명을 N.Y.C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대학교 헌가톨릭학생총연맹 민청련 등 1개 단체가 「민청련 탄압은 민중민주화운동 진체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5일엔 문익환목사 등 민청련 간부와 민청련 구속자 가족 30여명이 민청련 사무실에서 동성애 들어갔고, 당일로 민주협 간부 20여명이 동성애 합류했으며, 다음날엔 김내종, 김영심씨가 경찰의 저지를 뿐 치고 민청련

고문철 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폐를 같이 하여 이를 호위 위원장 許仁會군, 문용식군 등이 경우도 적지 않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표면화되어갔다.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김삼칠 목요상 장기욱 신기하씨 등 8명이 김씨 사건의 빙호인이에, 김씨 신체에 대한 시전 환영 등의 방법에 의한 검증과 성치부위에 대한 수상원인 및 수상일시의 의학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증거보존 청구서를 10월 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시 10월 5일 증기보전의 필요성과 신체감증을 즉시 하여야 하

共同對策委의  
발족

이처럼 각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조직된 항의 움직임은 「고문 및 용공 위」가 결성되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융집되어갔다. 민주협의 38개 단체 80여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 모여 공동대책을 수의하면서 태동했다.

NCC 고문대책위원회 초청 형식으로 10월 17일 NCC 인권위 사무실에 시의 간담회에 참석한 제야 대표 45명은 이 자리에서 공내위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 수사, 용공조작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공대위는 고문 9명, 공동대표 14명과 신교 23명, 불교 10명 구속자 가족 12명, 민통련(본부 지부 및 가맹단체) 60명 민주 힘 50명 신민당국회의원 51명 등 2배 40명의 대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전국적인 항의 움직임은 「고문 및 용공 위」가 결성되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융집되어갔다. 민주협의 10월 4일자 성명이 한 단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단체의 결성은 10월 7일 제야 38개 단체 80여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 모여 공동대책을 수의하면서 태동했다.

공대위는 10월 19일 민주협사무실에서 신민당 민주협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문 및 용공조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16전의 「고문사전」을 포함한 총 41진의 고문·폭행사례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삼이 민우 계훈제 인재근씨 등이 참석했고, 김대중 문익환 박형규 송진호씨 등은 가택연금 당해 나오지 못했다.

11월 4일에는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인권단체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를 위한 보고대회」를 11월 8일 해화동성당에서 갖고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대사관과 영국대사관·참사관이 나와 회견 모습을 지켜보아 눈길을 끌었다.

그리나 8일 저녁 7시로 예정되었던 보고대회는 경찰이 오전 10시부터 성당 출입을 통제하고 미리 성당 안에 들어가 있던 개회준비와 구속자가 죽음을 밖으로 끌어내는가 하민, 김내중·박형규·문익환씨 등 15명의 재야인사를 가택연금하는 바람에 해화동로

터리 태극당재과정에서 약식으로 치행됐다. 70여명의 참가자들은 약식 보고 대회가 끝난 후 약 30분간 혜화동로 터리에서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고 해산했다.

혜화동성당 보고대회가 제대로 치리지지 못하자 광대위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소문 민추협사무실에서 다시 보고대회를 가진 후 항의동성에 돌입했다. 문이환 계훈재 박형규 백기완 송건호씨 등 광대위의 일부 고문, 공동대표 및 대책위원들이 민추협사무실이 있는 진흥빌딩 부근에서 강제 기거조치를 연금당했고, 김대중 김영삼과 문희정우 양준직 박영록 김명윤 공동대표와 대책위원회 일부 및 구속학생 가족 등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오후 7시경부터 경찰이 중원대체민주협사무실 출입을 완전 차단, 신민당 김동영원내총무 등 현역 의원들 미처 농성장에 들어 가지 못했다.

건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전개된 대

속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었다.

— 85 · 10 · 18 미국부성 대법원이  
이래적으로 김근태씨의 이름을 들면  
서 한국정부의 탄압에 대해 개탄했  
다.  
— 10 · 20 미국 「뉴욕타임즈」에 김

명시를 발표.  
— 10 · 30 민청련과 민통련이 민족  
위사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과 함께 일련의 청명사를 각각 발표  
했다. 검찰은 29일 81년의 학령사전  
으로 복역 후 출입한 차文直세(8)의

고문사태를 극복하는 시장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김대중이다. 그는 1987년 1월 25일 신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고문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후조종이라는 용어는 주동으로 결성한 민주위가 삼민투위 등의 활동을 배후조종해 있고 10월 25일 기소된 김근태씨를 중심으로 한 민청련이 민주위의 또 다른 배후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 후 오전 10시 반 해제식을 갖고 11시 자진 해산했다. 3일간의 농성에는 신민당 민주당민통련 민청련 관계자 및 성직자 그늘자기 등 40명이 출몰 지리를 지켰다.

공대위는 그후 1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 11월 18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과 11월 21일 「서울대국민 대토론회」사건 및 민주당민통련 합동성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세개인권신임인 12월 10일과 김근태씨의 1심 첫 공판이 있은지 이틀 후인 12월 21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후 최내의 관심사었던 김근태씨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고문·서비스의 장이 법정으로 옮겨짐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은 한동안 둔해졌다가, 금년 봄 이래 일련의 사건이 터지

국내외의  
對應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여전히 피해자인 일반인들이 품고 있는 적대적 감정 때문에 사회에  
론의 관심권 밖에 밀려들어 있다.

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관한  
의자들이 빈번히 제기하는 수사과  
수장은 우리나라가 치한 안보적 상  
황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묵살되어  
버렸다. 다만 지식인, 학생, 정치인,  
교인 등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문사례는 매매로 폭로되고 사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일시적인 반  
응과 비판의 기운을 제공하기도 하  
으나, 널리 일반화된 억압적 수  
위행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그 근  
본적인 노력은 아직껏  
디에서도 진개된 바가 없었다고  
여야 옳을 것이다.

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직무의  
당자이기도 한 김창온 임꺽한 수  
지휘를 통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인권유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  
같은 이 같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 중 경찰의 적극적·농동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로 드물다.

한편 법원 역시 종래의 재판 실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고문 사실 주장 을 받아들이거나 고문으로 인하여 언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에 있어서 다분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여 온管家이다. 다만 근래에 의르러 세인의 이 목을 접종시킨 고속증여인 사건, 박상은 양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이나 사건에 관한 한은 점차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려는 동향을 보

民家協의 치열한 대응

구속자가족들의 대응은 구속자와  
기의 한 가지로 직직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행동이어서 어느 인  
사, 어느 단체보다도 치열하게 진개  
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

민기호은 밸류애 조율하여 성명서  
를 발표, 모든 양심수의 석방, 고문책  
임자 처단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이  
들은 86년 2월 10일 「민주가족」이라  
는 회지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문익  
환 목사의 격리사, 창간사, 고온시인  
의 축시, 민가협 발기문, 부분운동소  
개관, 미분화원사건 항소심 진술문

민본요지, 사진일지, 구속자 등의 소식, 성명서 등을 게재했다. 이 퇴지는 현재 4호까지 발간, 구속자들의 인권상황 및 민가협의 주장 등을 신고 있다. 금년 5월 8일에는 민가협 광주지부가, 5월 25일에는 대구지부가 빌죽되었다.

김근태씨 등의 시신에 치과시 무기 협 못지 않는 당사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었다. 민청련은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를 조직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보고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맹렬하게 대응했다. 민가협과 함께 쓰는 서울 중구 삼각동 할동빌딩 602호 민청련 사무실은 NCC 인권위 사무실과 함께 농성장의 대명사가 되었다.

위에 85년 12월 18일 소식지 「민청련 구속자 소식」을 창간했다. 구속자들의 동정, 공판 내용, 민청련사건에 관한 각계의 대응소식 등이 이 소식지를 통해 알리지고 전파됐다. 「민청련구속자 소식」은 9월 22일자로 11호에 이르고 있다.

86년 들어 주목을 끈 주요 고문사건 들은 보임사사건(12월)、「5·3仁川 사태」관련구속자사건(5월)、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5월)、그리고 부천 경찰시사전(6월) 등이다.

보임사 사건

가족들은 30일 호소문을 내 그들의 가족이 2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행해 있다며 속히 법적절차를 밟아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5일 진행된 사람들은 이미 29일 오후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가족들은 4월 1일 구속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4월 10일 다시 호소문을 냈고, 같은 날자로 민가협과 공동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 "치안본부는 살인적인 고문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전의 진상을 공개하라고 주

문을 비롯한 구속자 관계 일을 알리고 시정을 위해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라 도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찾아 가 만났다. 김근태씨 「고문사진」이 부인 인재근씨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 리지는 과정은 그러한 노력들의 단편 이다.

구속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85년 12월 12일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약칭 민 가협)를 조직했다. 민가협은 기왕에 조직돼 활동 중이던 구속 학생학부 모협 의회, 구속 노동자 가족 협의회, 구속 청년·민주 인사 가족 협의회, 양심수 가족 협의회(일명 장기 수가족 협의회)의 협의체로 발족했고, 86년 8월 12일 조직된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가 나중에 합세했다.

민가협은 빌 졸에 즈음하여 성명서 를 발표, 모든 양심수의 석방, 고문책 임자 처단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이 들은 86년 2월 10일 「민주 가족」이라 는 허지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문익 환목사의 거리사, 창간사, 고운시인 개란, 미문학원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20

위 대책위원회인 신민당 문정수 송천 영 안동신의원 등이 진상 공개를 요구 하는 질의를 합으로 씨 공식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4월 21일 NCC 인권 위와 고문대책위가 내무장관 앞으로 「불법연행 및 고문수사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 이 사건에 대한 의구 심을 밝히면서 구속자 공개면담 허용을 요구했다.

4월 22일 보임사사진 관련 구속자  
가족들과 기청(EYC) 회원 등 30여 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고문수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이었다. 이 농성이 끝나는 24일 N  
C C 일위는 고문내체위와 가맹 6  
개교단장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의 내  
용을 설명하고 내체을 논의하기로 했  
다.  
29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  
국연합회 대학에 수교장로회장이니  
다.

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연합회  
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현기독학생  
총연맹이 4월 13일의 1차 기도회와  
22~24일의 철야봉성에 이은 2차기  
도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입

로 넘겨진 사실을 알아냈다.  
가족들은 다시 시경에 시의 우선각  
신 끝에 현재 있는 곳이 시경 △△동  
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16일 오후  
이곳으로 몰리겠으나, 진달 밤 구속  
열정이 풀무내 각 경찰서 유치장에 분  
신수감된 뒤였다. 가족들은 먼저 동  
대문서로 찾아가 또 한번 송강이를 멀  
여 간신히 새 사람을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었다.

가족들은 다시 성동경찰서로 옮기  
가 2시간 동안의 항의와 요구 끝에  
김문수씨를 면회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담배 3대를 퍼울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부인 설란영씨에게 그들이 당  
했다는 「고문」의 내용을 똑똑했다.  
구속된 서노린 관계자가족들은 5  
월 19일 「노동자·청년·학생·민주인  
사에 대한 불법인행·감금·압수·수  
색 및 고문행위의 진상」을 조사해달  
라고 대한민협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빈협 인권위원회는 이날 정오 정례회의에서 전상조사를 의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빈정수 조승 형 강찰선민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지명했다. 위원장인卞禎洙씨(56)는 서 울고법부장판사를 끝으로 79년 개입

여성변호사의 호소

N.C.C. 고문내책위는 5월 30일 오 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 고문 등의 문제에 관한 비상시 국보고회를 개최, 보임사사전과 시노

정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시는 “이들의 행동이야 말로 기독 천 닌들의 당연하고도 분명한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14인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5월 1일 오전 10시 공대위가 기독 교회관 대강당에서 공동대표 및 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례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보고가 끝난 후 공대위는 “더 이상의 고문과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5월 9일엔 NCC 고문대책 위가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NCC 회장단 및 가맹 6개교 단장·총무 연사진에 대해 검토하고 친석자 공동명의로 이같은 사태의 중지를 요구하는

월 12일 오후 4시 민가협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연행 및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였다. 여기서 비슷한 시기에 연행됐다가 믿지 풀려난 노동자와 학생들의 입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고문」 얘기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김문수씨의 부인 薛蘭寧씨(35) 등 노동자 가족 10여 명과 청개노조 및 민가협 회원 등 모두 30여 명은 13일 오후 2시 40분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과 고문 중단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동자 가족 투쟁 위원회」를 결성, 소식지로 「노동자 가족 투쟁 속보」를 5월 15일, 5월 17일, 5월 19일 3회에 걸쳐 내면서 이를 통해 시도린 노동자들의 인행 관계 소식을 각계에 알렸다.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수시 기관을 찾아 나서서 먼저 물러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그 위치를 찾았는데 성공했다. 이 곳에서 민화를 요구하며 2시 30분 남짓 숭강이를 떠난 끝에 가족들은

인행했던 사람들이 13일 서울시경으  
련사전의 구속자가족들로부터 사건개  
요와 「고문내용」에 관한 증언을 들었  
다. 이 보고회 참가자들은 「비상시국  
에 즈유한 기독자의 결의」를 채택, 두  
「고문사건」을 규탄하고 「고문수사의  
중단과 그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했  
다. 친주교사회운동협의회도 같은 날  
「돌들이 와치리라」라는 성명을 발표,  
고문의 근절을 위해 「고문행위의 철  
지한 공개조사, 고문행위자의 처벌」

6월 1일엔 이성빈호사이자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며 11대 민한당 국회의원을 지낸 黃山城씨(42)가 「고문추방을 위한 호소문」을 각개에 배포해 놀라울 만큼 주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호소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고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고문을 당한 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시만 제기

스스로  
되어온 듯하고 지 같은 사람마저 너  
무나 배늦게 자각한 아픔이 더 아려  
울 따름입니다. (중략) 흉악 범, 양심 범 등을 막론하고 이  
들에 대한 고문행위는 악한 치사이  
며 그 같은 악행을 그리스도인이 외

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략)  
지금이 바로 이 악을 근원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서 권양사건

직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려분! 이 땅에서 고문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에 동참하시고 끽곳에 위장된 고문장소를 밝혀내어 선용하게 하며 고문도구의 완전 폐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황산성민호사는 세문안교회 청년식회  
자들의 신앙간증에서 고문 소식을 살피고  
세히 듣고 충격을 받아 이 글을 작성  
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 4일 1986년도 인권선언」을 발표, 「살인적인 고문행위를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부친경찰서 權 모양 성고문사전」은  
김근태씨 사건과 비견되면서도 어느  
의미에선 더 충격적이고, 따라서 회  
센터 큰 바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대응에서 특  
기되어야 할 사항은 순수 여성단체들  
로만 구성된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  
체위원회」 및 이 단체와 종교 단체들  
로만 구성된 「부친경찰서성고문공동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활동이다. 또  
대한민국이 이래적으로 희장 명의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검찰발표  
를 반박한 사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호인단의 구성 및 호인단의 제정신  
청 등 법조계의 강력한 대응이 또한  
두드러진다.  
기수환주기경이 귀양에게 위로의  
시헌을 보내고 이어 강론에서 이 사건  
의 진상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친명한  
일 수니단체들이 대응활동에 뛰어든  
일, 명동성당 사도회관이 폭로대회  
장소로 제공된 일 등 천주교회의 대응

이 같은 몇 가지 특정적인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표면화된 6월 26일부터 권양의 공문서번조 등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월 13일까지의 상황 전개를 살펴보자.

1. 6·25 인천교도소에 권양과 함께 수감된 「인천사태」 관련 구속자의 가족 등을 통해 권양의 「성고문」 사실이 외부에 치음 알려졌다.

한편 20개 어성단체 연합기구인 「어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 회원 30여명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날부터 NCC 일권위 사무실에서 「어성에 대한 성적 고문 을 규탄한다는」 성명시를 내고 농성에 들이갔다. 이들은 「인천사태」에 관련해 구속된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곳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 이에 대한 항의로 농성을 시작했던 것. 농성은 28일 오후 해제됐다.

CC회장단 및 가맹 6개 교단장·총무초청 연석회의를 갖고 이 사건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는 내용의 전의문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 7. 15 천주교 천주교구 사제단은  
원주 원동성당에서 성그레고리오 기도회  
를 개최했다.

는 명동성당 속 도회로 이사기 거주장을  
갖고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  
다.

검찰수사결과에 반발

— 7-1 이상수 번호사가 권양을 면회했고,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경위보고서를 발표했다.

— 7-2 이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가 입 단체 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4시경에는 인천사테 구속당한 자가족 등 30여명이 부천경찰서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 7-4 생대위가 사건 폭로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대표들이 부천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다. 신민당은 이날 「부천경찰서여 대생폭행사건 진상조사위 원회」(위원장 박현상 의원)를 구성했다.

— 7-5 고영구씨 등 9명의 번호사 등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 7-7 생대위가 공개항의서를, 천주교 인천교구 정평위 등 인천지역 3개 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이 이날부터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신민당의 진상조사위 및 인

책위원회(이하 성공대위)가 발족됐다.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수녀회장상인합회(회장 김순자 수녀) NCC 고문대책위 정토구현전 국승기회(회장 청화스님) 천주교사회 운동협의회(의장 재정구)가 참여했다. 17·12 신민당 조사단이 법무부를 방문,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야원로 변호사를 특별검찰관으로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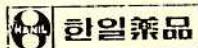
검찰수사결과에 반발  
— 7·18 성공대위는 오전 8시 1  
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개화 여성계  
인사 1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고문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  
은 홍성우변호사로부터 사건 조사내  
용을 보고받은 뒤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  
다.  
또 권양의 민호인단은 이날 오전 9

# 간장약 퍼로 헤파룸-골드

\*간해독  
★지방간제기  
★간기능활성  
★소화촉진  
★혈액순환촉진

5종 효과의 종합간장약  
**퍼로 헤파룸-골드**

표준소매가격 : 100점 9,900원



복용하고 계십니까?

★간해독  
★지방간제기  
★간기능활성  
★소화촉진  
★혈액순환촉진

취급이 개탄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소름끼치는 일인을 안다. 수감자들은 의 고문과 학대에 관계되는 모든 사 진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체임 있는 자들을 치벌하고, 이 같은 권리남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7-28 1-8-11 광주 부천 이리 청 1-백 66명의 사상최대 변호인단

주부산 대전 등지에서 종교단체 주관으로 「성고문」 폭로·추방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1-8-14 신민당과 민주협이 주최한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 대회」가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강행됐다.

1-9-1 집찰이 8월 22일 문귀동 경찰을 기소위에 차분하게 사법시정 회를 열고 부친경찰서 사진의 진상 규명을 함께 요구했다.

1-10-7 권양의 재정신청 민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 3부에 이 사건 수사 기록 등 사실청을 제출했다.

1-10-11 민호인단은 다시 서울고법에 진찰과 문귀동 쌍지를 직접 불러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1-10-12 권양의 광문서 민조 등 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의 심판에 붙이 김에 신청했다. 이 신청은 9월 5일 피신청을 제기했다.

1-10-15 권양은 국가를 성대로 5

온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9일 기도회」를 열고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거듭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 지급이라도 진실을 밟힐 것을 촉구했다.

1-8-4 천주교 전기회 헌금축제 나온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9일 기도회」를 열고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거듭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 지급이라도 진실을 밟힐 것을 촉구했다.

1-9-7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조계종 승려 2천여 명이 「불교 관계법

시 범원청사 내 변호사 대기실에서 동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섯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고, 공대위도 검찰의 발표에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수환 추기경은 이날 권양에게 위로서 할을 보냈다.

한편 신민당은 이날 오전 이종재부총재와 박찬종 인권옹호 위원장 조수형 의원 등을 노신영국무총리에 보내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항의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을 제자요구했다.

1-7-19 공대위가 주최하는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 대회」가 19일 오후 2시 명동성당 구내사 도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 있으나 경찰의 저지로 제대로 치리지지 못했다.

1-7-21 대한변협은 김은호 회장 명의로 「성고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미사 강론에서 당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양은 이날부터 검찰 발표에 항의, 단식을 섰다.

1-7-25 합식한씨 등 재야 민주동 지회 회원 20명은 간담회를 갖고 권양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과 단식을 중단할 것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냈다.

1-7-26 김대중, 김영삼씨도 권양에게 편지를 보내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1-7-27 NCC 고문 대책위 등 23개 개신교 단체로 구성된 「성고문 추방」 회로 대체되어 진행됐다.

1-7-29 미국 무성 공보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천서사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 경찰관과 그의 비난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검사는 이 사건에 관계된 경찰관과 그를 친밀한 관계를 구나하고 유토를 피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경찰관과 그의 상사 3명이 해직되었다. 권양에 대한 경찰의 가혹 행위가 시인된 사실보다 더욱 심하고 가혹한 것이 있나는 믿을 만한 주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감자

한국한 스모그에 그을린  
**오양珍味**  
임맛대로 드세요.

고소하고 향긋한  
**오징어침보**  
부드럽게 구운  
**오징어구이**  
얇게 썰어 조미한  
**통해구이**  
바삭바삭 튀긴  
**오징어튀김**  
다리만 떼어 조미한  
**오징어타리구이**  
매콤달콤한  
**오양진미꿔볶**  
수신식품이 원조  
**오양수산(주)**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태평로 1가 76-1  
1-722-6940-9  
•판매부 : 서울 1-718-6785-7 부산 1-242-8010

은 이들의 대응에서 이 사회의 「反拷問」 「反性拷問」의 의지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양사건에 대한 대응에는 이 사회의 거의 모든 양심세력의 슬픔과 분노와 마음이 점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이 어떻게 어떤 해악을 이 사회에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급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 당국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같은 인식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고문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한다.

지난 83년 4월 내무부는 김근조 씨 고문처사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임무 유치장소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기재된

은 이들의 대응에서 이 사회의 「反拷問」 「反性拷問」의 의지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양사건에 대한 대응에는 이 사회의 거의 모든 양심세력의 슬픔과 분노와 마음이 점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이 어떻게 어떤 해악을 이 사회에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급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 당국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같은 인식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고문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한다.

지난 83년 4월 내무부는 김근조 씨 고문처사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임무 유치장에 기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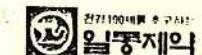
## 일동제약이 개발한 위염·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 1일 2회 간편한 복용
- 1주일 증상 소실
- 1개월 단기간 치료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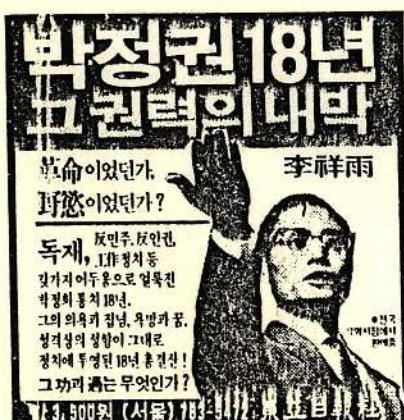
표준소매가격 60정 : 49,800원  
20정 : 16,600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선안은 △용의자를 임의동행할 때 사유를 통보하고 △경찰서 조사실을 별도로 설치, 녹음장치와 TV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며 △야간수사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 지난 7월 18일에 치안본부가부 천시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근무지침을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침에서 스하원사태 등과 관련해 연해한 여성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 또는 여성타이피스트를 입회시키거나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입회할 것△ 피의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85년 10월에는 고문금지 등을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일명 B조약)에 가입키로 하

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내놓았다. 물론 몇개항에 대해 선정용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같은 노력들은 83년 4월의 조치가 용두사미가 되었던 것처럼, 수사당사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갖지 않는 한 실효를 기울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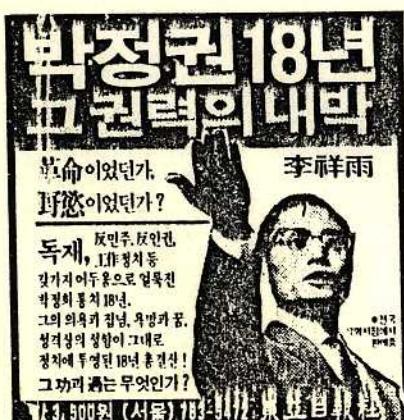
고문의 근절을 위해선 고문 그 자체를 안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당국이 연행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를 철저하게 저법하게 빌음으로써 고문의 기회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사법부가 그 진한 과정에 충실히 함으로써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근태씨 사건의 1심 민호인의 봉론을 보면 그 중요성이 절감된다.



유치장소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발았다.

물종을 강요



319.....司法府는 拷問追放의 마지막 보루

라고 하더라도 이 暗數의 폭은 높게 페지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압수 가운데 현실적인 소송절차 과정에 까지 이르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은 단순한 법의 적용에 의한 논리적 필연적 산물만이 아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복합요인들을 고려하여 범죄 통제과정에서 어하히 다른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법문화의 민주주의적 성숙도를 거의 정화하진 않을 수 있다. 일찌기 「원스 턴 치칠」경이 「한국민의 위대함은 그들이 그 사회의 범죄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한 저의 말이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과거 累罰簡次制度下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실을 진술해 야 할 의무가 과하여졌다. 만약 신문자의 눈에 피의자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보이면 자백강요를 위한拷問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확립되기도 시작한 強劫主義的 형사절차에서는 인권사상의 지도 아래 피의자에게 自己負罪自否의 특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의한 고문을 배제하기 위한 고리로 피의자에게 진술기부권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탈해주의적 소송절차의 원천이 사설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어리가지 인권보장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

장책은 인권이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민족스러운 제도의  
완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 현실  
은 이 불충분한 법제도상의 요구 조차 제대로 충족시켜 주  
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행하는 무더기 구속사태, 불분  
명한 영장의 남발, 임의 동행을 막지 못한 불법拘引, 보호라  
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법拘禁등은 피의자 구속에 시수  
하기 등의 인권의식과 수준을 감마니 하고도 남는다.

**불법언행과 불법구금은 그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법정의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라는 확립된 법원의 관행이 없이는 고문은 근절되기 어렵다.**

# 同法院는拷問追放의 마지막 보루

# 金日秀

한 나라의 法文化수준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결정된다. 이 민주주의 성숙도는 그 나라 사회의 지배계층이 얼마나 법적 절차와 요식에 맞춰 충실히 행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지배계층에서 떨어져나간 소수 소외계층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정당화된 이 지배계층의 행위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존중되고 조장되고 있느냐에 따라 판명되리라고 본다.

흔히 범죄인을 사회적 강자처럼 다루는 오류를 우리의 刑事司法은 자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 할 만한 장례법 또는 정치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라는 자위는 이미 한 사회의 외과에 밀려나 앉은 소수의 약자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범죄율을 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긴장한 사회

우리司法文化의 현주소

압도당하는 과정이 신문인 양 오인되는 경우가 있지 않다.

사법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및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수사기관의 일권침해적 고문상황은 사법절차의 출발전제를 뒤엎고 있는 것으로 사법은 당연히 피고인의 이 같은 소리에 민감해야 하고, 의식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소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사법은 도리어 비민주적·권위적 사법에 머물리 있다는 비난의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도시 법관은 자기 앞에 서 하는 피고인의 밀언에 전혀 비중을 안 두려고 한다. 검사 앞에 서의 자백은 진작으로 신임이 가고 자기 앞에 서의 부인은 얄미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리는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의 밀정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형을 가중했다는 뻔뻔스럽고 가공할 만한 독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커가며 검사를 지휘·감독하여 피고인을 물어뜯어는 주역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불쾌한 그 이상의 것이라 는 소리도 들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든지 이법을 소주자족에 있다는 것은 청사증기법상의 대원칙임에도 현실의 운영은 종종 그 반대이다. 1981년 3월 10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한 대법원판결(81도 68사건)이 있기까지 25년 간 소송절차에서 재판자들은 단지 증거의 어왕이 아니라 증거의 폭군으로 고립해 왔고 하다한 오만이 법원의 검찰자 배·지심의 과오 때문에 벌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 다.

인간사조의 영향 아래 재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지

피의자는 조사의 객체이며, 피고인도 강재치분의 대상내지 절차의 대상 또는 종기방법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은 화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주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보 때문에 구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고 그 결과의 드물니지 즐기 일들을 빛지하는데는 公判審理를 위한 '원증서'와 '전주한재판화보' 및 혹시 자유형의 실형선고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그 짐행을 하보하기 위한 것이지 규문절차에 시처럼 피고인·피의자를 묶어두고 신문하여 차매을 받아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형사사법에서 구속영장이 날뛰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밀바탕으로 하여 죄를 지었으니 고생해야 마땅하다는 용보적 정벌구금의 잘못된 인습 때문이라고 보인다.

불법수사결과는 결연히 배척해야

더 나아가 사법부는 불법구속이나 불법구금으로 일은 자백 또는 증거물의 효력에 대해서 그것이 경찰 앞에서 행하여진 결과이전 검찰 앞에서 행하여진 결과이전 간에 일 체 단호하게 배척하는 결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종래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절을 어제 당한 수사기 관은 혼히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강제연행과 이에 따른 가기장의 노로 구속장을 이용하여 불법구인과 불법구금을 탈 법적으로 행하여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와 번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구속 사실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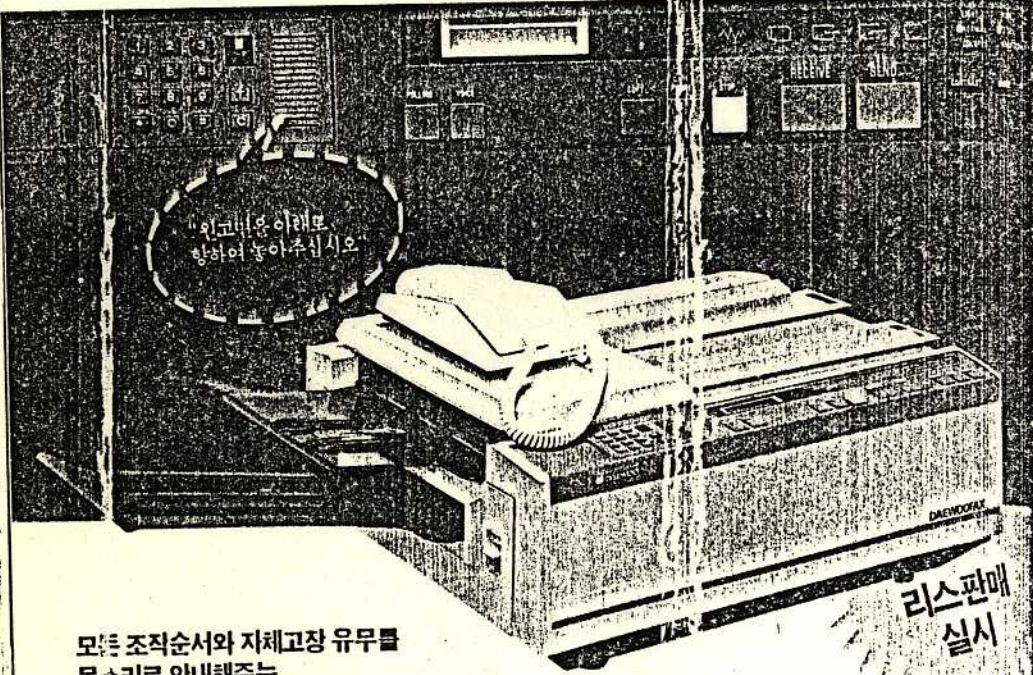
司法府가 해야 할 일

수사절차에서 자행되는 고문을 방지·근절하기 위하여  
는 과학적 수사가 정착되고 수사인력의 인권의식이 내면화  
돼야 하는 등이 근본적인 개선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제도상 같은 고문을 수사풍토에서 영원히 추방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고문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  
을 취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수사관 그것이 비록  
고문수사라 헐지라도 사법절차의 요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이 같은 고문의 의심이 있을 때마다 일체의 수사기록과 설  
파의 진실성을 기부한다면 수사기권에 대한 인권의식과  
직접한 수사에의 동기유발에 큰 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민지 사법부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심사에  
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원칙  
또는 임의수사의 원칙이라는 소송법의 흐름을 좋아 휘기  
직인 판행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형  
사사법의 현실에는 아직 응보형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  
응보형사고는 피의자·피고인의 무죄주정이라는 험마저  
권리를 사실상 임도해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대우통신

## 말하는 팩시밀리 —

# 대한민국



모든 조직순서와 자체고장 유무를  
목소리로 안내해주는  
다기능·초고속 대우 팩시밀리 DF-1000

대? 팩시밀리 DF-1000은 국내유일의 독자적인 음성  
안내기능으로 모든 조작이 손쉽고 간편한 비즈니스  
카피레이저이신이 축출하기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어리가지 혁신기능으로 OA시스템  
구성에 가장 적합한 대우 팩시밀리 DF-1000  
새로운 차원의 본격 사무자동화기기 대우 팩시밀리로  
경비절감과 능률화성을 동시에 실현하십시오.

#### 「」대우 레시밀리 DF-1000의 10가지 혁신기능

- 국내 유일의 독자적인 유통안내 기능(입하는 맥시밀리)
  - 100개소 단속 디아이 기능
  - 시각적 속수신기 기능
  - 1차 리디아이 기능
  - 컴퓨터 연동 기능(RS-232C)
  - 시장부서 요금 관리기능(100개소)
  - 송수신 애수 제한 기능
  - 원고통도 3개로 조정 가능
  - 순차 Polling 기능(100개소)
  - 송수신 Report 기능

#### ■ 전국 지역별 판매점 및 아프터 서비스점

**취급대리점** ■ 서울본점: 02-4741 ■ (주)영진 OA 788-1821  
■ 대우컴퓨터 대리점: (인천)64-9551 ■ 부산지역: 대우 OA SYSTEM  
462-2010 ■ 한진비즈니스: 82-9338 ■ 경남지역: ■ 세광통신공사  
339-2211 ■ 신한: 1140-4000 ■ 대우디자인: (미사)42-2755

■ 시설지역: ◎(주)리미기 중앙 756-2244 ◎강남: 553-3211  
피매특약점 ■ 의무: 783-3211 ■ 음식: 784-3211 ■ 업무: 616-3211

대구광역시 컴퓨터 및 철도통신기기 744-2001  
대구광역시 철도통신기기 및 철도통신설비 관리자

• 전국번호 : 782-1166 • 전화번호 : 546-5511 • 팩스 : 546-5784 • 한국DA SYSTEM  
333-570-8888-8888 : 333-3551 • 웹사이트 : 546-5784 • 한국DA SYSTEM

586-7120 • 한국오피스카페티 294-8095 • 채워진산 784-2133 • 산마천산 583-8520

•한국전산: 752-1091 •영국전화: 533-3111 •미국전화: 312-3211  
•대한: 2-2211-2211 •영국: 54-3211 •일본: 762-3211 •설화: 93-3211

■ 경원: 충남영지 1-1 • 주)리아카 청주: 52-2903 • 대전: 45-3211 • 춘천: 53-3211

■ 전남북·제주지 1 · 주)리미카 편주 : 04-3211 · 충전 : 52-1711 · 충전수 : 4-3211  
■ 전남북·제주지 2 · 주)리미카 편주 : 04-3211 · 충전 : 52-1711 · 충전수 : 4-3211

■ (주) 총국 철연도 플랜트센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획부 : 755-2021)

www.ijerph.org | ISSN: 1660-4601 | DOI: 10.3390/ijerph17103670

**סְבִּירָה בְּרַאשׁ הַדָּבָר**

**DAEWOO FAX DF-1000**

1996-1997 學年 第二學期

**THE END**

新編 金匱要略 卷之三

中華書局影印

**ANSWER** The answer is 1000.

연히 접사에게 돌리야 할 것이다. 자백은 원래 증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이 왔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이에 접착한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럴수록 자백의 증거능력에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자백 편중으로 인한 고문의 폐해를 줄여 할 필요성도 크다. 더 나아가 위법한 절차에서 얻어진 자백이나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사법부는 엄격히 부인하는 입장을 전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멀실에서 강요내지 오도된 자백이 공판정에서 증거의 여왕으로 활용받고 있는 한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또는 자백의 존적 수사자세는 시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일단 체포되면 그때부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위주의적·고압적인 수사기관의 수중에 사로잡힌다. 더 우기 협행제도 하에서는 피의자 조사시 번호인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는 구속된 그날부터 절지하고 뒤되어 자기를 방어할 능력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한 피의자에게 진술기부권을 주지 않거나 집전·교통권을 부정하고 수갑이나 포승으로 묶어 놓은 채 조사를 거쳐 얻어낸 자백은 피의자의 주체성을 짓밟는 비인도적·비문화적 치사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칠지히 부인하여 그와 같은 위법절차로 얻어진 증거가 지내 절차에 의해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에 도저히 밟을 불여 놓을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고문·폭행·침박·기망·신체구속의 무당한 장기화(형 소법 제 309조)로 얻어낸 자백이 직접적 고문상황에서 자란 악한 열매이듯이, 위법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얻어낸 증거물도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념에서 본다면 경증을 가릴 필요없는 간접적 고문상황을 통해 맷한 악한 열매임은 말

요컨대 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사법이라면 위법절차에 의해 얻은 증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적이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엄격한 입장을 세로이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러자면 우선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 즉 불법구금 과정에서 얻어낸 자백, 별건 구속증의 자백, 번호인의 신임 및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施錠조사에서 얻어진 자백, 개인의 인격성의 자율과 인격적 内秘를 침해하면서 얻어낸 자백, 친지 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하에 얻어진 자백, 친지하게 전술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거나 적나라한 폭력 앞에 그것이 真偽를 시도, 사내에서 강요된 자백은 사실부 스스로가 누구의 향俾을 듣기 이전에 헌법 규범으로부터 명령받은 고유한 인권옹호의무의 이행에 의해 소송의 과정에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물 역시 이를 증거로 함에는 그 위법성의 정도와 압수물의 성질 등을 염

할 것도 없다. 특히 이 점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형상이나 성질에 번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물의 증거 가치에 면함을 인정하는 입장(大判 1969. 9. 17 선고 68도 932 사건 판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견이라 하겠다.

격하게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중거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태도가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은 다수의 소송 관여인과 소송주체들의 의사소통과 대화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형성해가는 민중론적과정이다. 이 전체 과정에서 만약 어떤 고문상황에 의해 언어로 아만적인 증기가 물세될 때에는 일단 수사기고로 지금까지의 모든 다른 공소유지의 자료와 노력을 허구로 돌려 버리고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즉각 확인하는 인권우호적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고문이 부가 문제되는 한 마장한 수사권력의 도덕적 전식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고, 이 점을 물어 두고 뛰어 넘은 판결은 아무리 그 결과가 경험적과 법률에 맞는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손상된 정의감을 만족시키 줄 수는 없다. 결국 억울하다는 당연한 절규만을 배정에 남겨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철령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지라도 그 결과에 송복하기는 키녕 법과 사법을 원망하게 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개선의 노력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문은 그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법의 실현이라는 기한 목표를 이처럼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로

司法문화의 무던人權의식  
1984년도 범죄분석이나 범위행정치의  
대검찰청의 1984년도

인신구속은 같은 인격파괴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  
히 정당화될 수 있다.

자체는 피구속자를 포로와 같은 무방비한 상태에 진락케 한다. 외부세계와의 단절 속에 고립되고 나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꿈과 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것이 장기화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의 치지를 비판하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등 고문상황에서 야기되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상실 및 외부세계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똑같은 인격상실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정당화하게 되면 하물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구속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인격상실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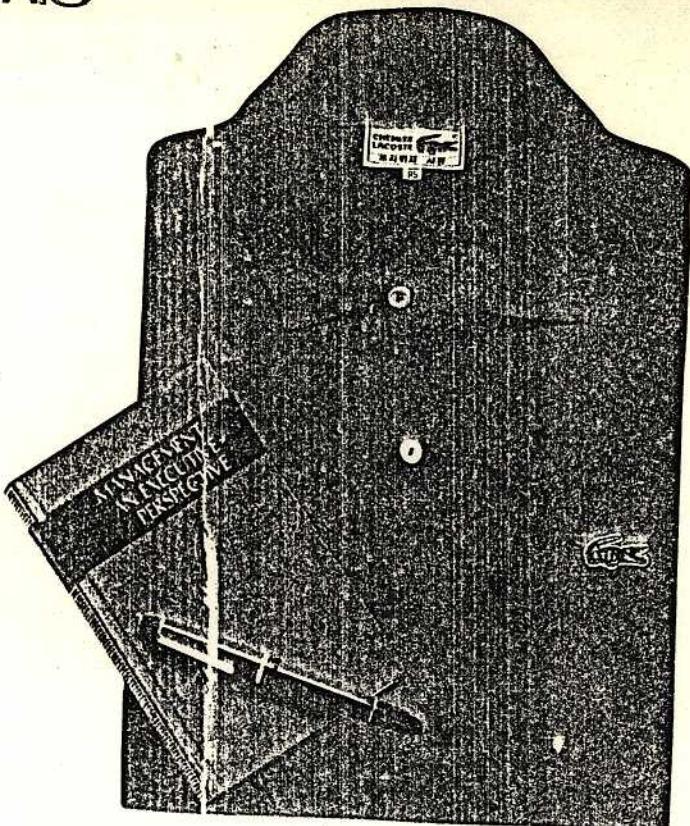
1985년도 「사법연감」에서는 공판사건 중 구속기소 사건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1981년을 고비로 하여 종전의 81.5%에서 77.9%로 감소되고, 1984년도에 이르러 75.8%로 줄어들었으나 역시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속수사사건 중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건의 비율은 75%이고 나머지 25%는 구속취소 처방되었다.

한편 구속기소 사건 중 58%대 서명하는 사건이 41%

에서 집행유예·벌금형 또는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 형집행의 화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인신구속이 불필히 남용되고 있다. 이 같은 남용은 구속 자체가 응보적인 징벌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위한 인질수단으로 오용되거나 피해민상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문화의 무던 인권의식 때문에 비롯된다.

비록 저범한 요식성을 갖춘 구속이라 하더라도, 구속 그 자체는 피구속자를 포로와 같은 무방비한 상태에 진락케 한다. 외부세계와의 단절 속에 고립되고 나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꿈과 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것이 장기화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의 치지를 비판하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등 고문상황에서 야기되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상실 및 외부세계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똑같은 인격상실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정당화하게 되면 하물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구속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인격상실에 이르게 된다.

1925년 위를난 테니스대회의 챔피언, 르네 라코스메!  
그가 탄생시킨 아이미크 「라코스메」는 세계 끌프챔피언의 유니폼으로,  
세계 몇십억의 캐주얼웨어로 오늘날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어서 내가 민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르네 라코스메의 철학이 반세기를 빙험없이  
라코스메의 제품 하나하나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초월해 유행을 리드하는 아이철학, 강원해 보십시오.



## “악어의 哲學”

1925년 위를난 테니스대회의 챔피언, 르네 라코스메!

그가 탄생시킨 아이미크 「라코스메」는 세계 끌프챔피언의 유니폼으로,  
세계 몇십억의 캐주얼웨어로 오늘날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어서 내가 민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르네 라코스메의 철학이 반세기를 빙험없이  
라코스메의 제품 하나하나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초월해 유행을 리드하는 아이철학, 강원해 보십시오.

  
LACOSTE

에 범원은 기왕에 주어진 영장심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 기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례 소명자료에 의해서 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허락하는 사법부의 타성은 새로운 인권감각에 의해 깨뜨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영장대기 위한 「보호조치」는 불법감금

일찌기 대법원은 영장대기를 위한 이른바 「보호조치」에 대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법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그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찰관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1항)를 범한 것임을 인정하였다(大判 1971·3·9 선고 70도 2496 사건 판결)。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5·7·19자 85도 16호 사전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 3명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폐신고자 김모씨가 불온빠리를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서까지 일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6일간 기간 조치시키지 아니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서의 조사실과 보호실에 억류 내지 유치하였다. 그후 이 피해자의 형은 수사경찰관 3명을 상대로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에 관하여 김활은 입증할 자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대구고등법원

이재정검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고발인이

물론 1964년의 에스코베도 판결과 1966년의 미란다 판결에서 미인방대신원은 「위법한 절차 하에서 얻어 진 자백은 그 위의 성유무에 불구하고 중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소위 위법배제설을 확립하였다.

### 技术作成조사의 증거능력 부단한 평가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오고 있다(大判 1982·6·8 선고 82도 754 사건 판결)。

이러한 태도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입장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17조 1항이 정지조건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상응할 수 있음을 지적이다. 이 판례의 태도는 피의자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작성의 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몇 가지 팔목할 만한 판례들도 있다. 하나는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강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해 징을 윤문을 달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수감 중에도 야간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면 좋지 않

다. 대법원에 제하고 하자 대법원은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구속과 불법구금의 법률해석을 그로 친위법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1조 및 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식없는 자백 또는 위법절차에 의해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문제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과거 너무 수사기관의 편에 기울이지 결과적으로 고문적 인권침해상황을 비호하는 판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법관들도 인간의 개개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군의 인권판례(Escobedo-Miranda Rule)에 접근하는 전취적 자세를 접차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는 상대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과 함께 피고인의 신명을 송치받은 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칙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임의 있다 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있다(大判 1982·2·23 선고 81도 3324 사건 판결)。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그 후 하급심판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가장 최근인 1986·10·7자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고문후의 양압된 심리상태 아래서 범행을 저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혐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경찰의 주장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東亞日報」 제200005호)

## 大法院의 팔목 할 인권 판결

우리 대법원의 팔목 할 만한 인권 판결로는 그 밖에도 소위 金詩勸 판결(大判 1982. 9. 24. 82도 1479 사건 판결)、鄭載巴判決(大判 1983. 9. 13. 선고 83도 712 사건 판결) 및 高淑鉉判決(大判 1985. 2. 26. 선고 82도 2413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들이 모진 고문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값비싼 대가를 치루하고서야 우리 시대가 비로소 연을 수 있었던 인권 판결이란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金詩勸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차피 진범이 나타난 상황에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표적인 케도수정장을 단행했던 것이다. 즉 「경찰조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는 진제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강요에 의해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피의자 있던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그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진술서의 진정성(眞實性)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필이 임자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郑載巴判결에서 대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임자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르게 되었던 것이다.」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것을 거부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몇 가지 이와 같은 인권 판결로 우리 시대의 고질적인 고문의 복리를 치료하고 이를 영원히 추방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풍토의 장벽이 아직 너무 두텁다. 수사의 민주화와 인간존중화가 같은 인권 판결의 바탕으로 싹을 트기에는 아직 그 토양이 너무 침바하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金權泰 사건이나 부천서 사건 마위가 우리 주민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의 처리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태도와 또 보여줄 티도가 반드시 악진을 허용하는 진개되리라는 낙관론을 퍼기 가 주지스럽기 때문이다.

### 司法府와 인간 존중의 정신

인재부티인가 우리들은 법원의 검사와 검사의 경찰화 현상을 인권상황의 위험수위 내지 적선으로 기른해 오고 있다. 서울 등 큰 도시를 제외한 지방 소도시의 법정에서 아지도 단독 판사가 검사의 입회 없이 김찰관 겸 재판장의 일인의 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거나 사법경찰 관리의 불법수사를 통제해야 할 인권옹호직무를 겸하고 있는 법률가인 검사가 손이 안으로 굽는 시의 반인권적 비리의 비호에 규규하는 날득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하는 일인의 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거나 사법경찰 관리의 불법수사를 통제해야 할 인권옹호직무를 겸하고 있는 그리고 필요한 한 피고인의 인권이 이율 위해 소송에 직판장이 호통을 치며 내가 기록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무순 떤 수작이

나고 묶시 꾸짖기에 국가기관은 아니나 다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이 빙망할 것을 체념하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심문에 응했다는 어느 刑餘者の 말은 우리의 사법현실의 이두운 한 장면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저어도 이제부터라도 법원은 검사와는 다르고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법칙국가적 보장자 또는 인권의 진정한 퍼수권이라는 입장을 이기고 진정한 퍼수권을 트로서 약한 자·약할린 자·희에서 그 고통의 스티를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진 적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인간 존중의 정신」(sense of humanitatis) 속에 살고 있는 나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형사사법의 대항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인간으로서의 능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법 주체임을 깨우치는 진지한 노력은 사법부가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형사사법도 이 풍요한 정신 속에서 더없이 정의의 와침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인은 그가 비록 아무리 극악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사회의 일원인 존인간(Mitmenschen)이지 마귀나 애수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문폐지운동이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라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선언과 더불어 「치벌을 하든 교육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페테」의 말을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법윤리적 지침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

405……拷問의 溫床, 不法拘禁

속하에 특별사무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하자면 구속 고유브즈멘(ombudsman)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근래 어느 하루보가 자기 아들이 「기란에 인생되어 갔다는 소식을 듣고 知道을 축출원하여 아들의 소재를 배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아무 대도 그린 사람은 없다고 한다는 하소연을 들었을 때, 친정 무순 체포·인행문 센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절감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이 비밀비제한 것은 결코 아니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시간이 실로 불안과 초조의 인속 일 것이다. 미라시 위재암은 본래 특권을 가진다. 그의 재암은 이렇게 이겼 있다.

「우리가 구속의 의미에 관하여, 제 말로 걸어다닌 사람을 걸어다니지 못하게 했을 때는 참히 간것이다. 즉 구속된 것이라고 하는 기본

법적 권리만 내세우면 자칫 폭력을 키우게 된다. 불법수사로 뱂어진 「의의 열마」를 보

이런 상태인데도 구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심세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고 한다 해도 무순 소용이 있겠는가. 선진국의 영장제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고 상황적인 여러 문제가 있으니 그림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로 하든 대통령령상으로 하든 사람을 잡아가는 대는 경찰서장이 나 아니면 수사개장의 확인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일이라 하겠다. 어디서 온 누구의 책임으로 집아가는지, 왜 잡아가는지, 어디에 집아놓는지라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확인서라도 해주도록 한다면 사후의 구제와 규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인하 「모든 국민은 법관의 영장 없이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허구적 규정에 만족하하다가 도리어 「모든 국민은 아무리 진혀 가더라도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구속이 되는 것 아니고, 따라서 법률상 규



## 拷問의 溫床, 不法拘禁

金尙哲

(副説 1)

「기본적 인권과 형사절차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있다. 주최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였는데, 종합토론에서 미국의 형사법에 까지 정통한 어느 변호사가 본인 표현에 따르더라도 「엉뚱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무슨 빼이론을 말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불들려 갔을 때 어디로 불들려 갔으며 왜 불들려 갔는가 확 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마 있으면 좋겠다. 누가 불들려 갔다고는 하는데, 대체 그 기관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경찰이면 어디에 있는 경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한 수사기관인지 그 가족이 이를 사이라는 대로, 나한테 같은 곳에 이끌고 오랫동안 그 화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하인할 길도 없다.

체포·인행에 대하여 국민이 찾아 가호소하여 책임있는 담임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예컨대 대통령 직

정된 피구속자에 대한 인권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전 락되어 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전문가 중 한 분이 법률가들만이 모인 심포지엄 자리에서 「나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치고라도, 집하간 분인은 어떤 상황에 치하하게 되는가. 법률 들어 이어서 정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렇다 한 바에야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하간 사람의 가족들이 밖에서 정의하기까지 들렸으나, 실정이 그려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미 하나의 충분한 심리적 고문인 것이 다.

掛問은 「絕海孤島」이서

1982년 7월 밀 金詩勸이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高法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던 때 전범들이 겁기됨으로써 극적으로 석방되었는데, 풀려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문상황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이 세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혹독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살 아 숨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자살서를 냈던 날은 7월 16일 새벽 0시 반경에는 이미 나는 봄과 마음이 탈진상태였다. 작년 7월 12일 충북 청원군의 밀목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임행당한 뒤 진주시 진북 2동 바출소에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기 시작한 지 꼭 나흘째, 그 배는 모든 것이 키워아지고 허라도 깨물

이을 위한 사명감 때문이라는 맹신적  
인 자신을 가진 까닭에 개인의 인적

체포·구금의 適法절차  
치되어 미물다 당일 김천에  
된 것이다.  
송차

당을 기종성이 끝나 배분되게 아다  
84년 11월 27일 화정된 宋氏 일거에.  
대한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대법원판  
결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되어 짓개는 75일, 많  
개는 1백 16일이라는 상상을 넘는 장  
기의 불법구속을 당하고, 그 과정  
에서 일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신체  
상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으니 화인되  
있다.

86년 7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된 金成鶴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판결은 그가 85년 12월 2일 구속영장 없이 인해되어 72억 원을 불법구속된 상태에서 심리적 유투자 체적 압력을 받으면서 수사를 맡다가 86년 2월 12일에야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수히  
얼이 맞아 온 몸이 성한 테가 없었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이렇게 죽이는 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다  
시 곤봉으로 미리와 이깨 등을 마구  
베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  
「이차피 너는 꿀병이 들어 오래 살  
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겁  
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주위에 있던 형사 5명이 달려들어  
양동이 속에 미리를 치박으며 구둣  
발로 미리와 등을 마구 짓밟았다.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  
을 때는 밖은 이미 어두웠다. 나는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불펜과 종이  
를 달라고 했다. 그들이 불리주는  
대로 저었다. 손도장도 찍었다. 내  
가 사람을 죽였다고 죄를 짊었다.  
그는 7월 12일에 불법 연행되어 개  
속 파출소에 갑금된 채 고문수사를 받  
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은 열흘 만인 7월 21일 0시 10분 경  
이다.

한다. 영장에는 피의 사실과 구속의 사유, 영장 청구자, 영장 발부 판사, 구금상호 등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다. 영장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에게 그지와 들키지 민호인을 신설하여 조사력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알리주어야 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구속사실과 죄명, 구속장소를 자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구속기간도 경찰에 시는 통상 사건에 있어서 10일을 넘을 수 있고, 경찰에 서는 10일이 되 판사의 연장결정으로 1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을 한 번씩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의 주결심판을 받았으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개속 파출소에서 고문수사를 당하였고 구류기간이 끝나고도 물론 서방되지 아니하였다는 법理상으로도 이러한 구류는別件拘束이라 하여 불법구속에 해당한다.

결국 그는 10일간의 不適法 구금하여 모친 고문을 당하여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죄의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문은 그 자체가 흉악범죄이기에 비밀이 간직되어야 한다. 밀실에서만 이루어진다. 고문은 공포가 본질이다. 죽음의 공포이다. 따라서 피고문자는 절 혜고도에 놓어지야 한다.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이다. 빔으로부터의 티끌과 같은 보호나마 기대되어지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고동의 생성 조건은 適法절차가 송두리 채 무시되는 태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불법의 구금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불법구금의 기간은 일반의 자인법 사건에 시보다 아무래도 公安전개 시 긴에서 장기화될 위험이 커진다. 공안사건에 있어서 주시기관은 국가이

가족과의 친전·교통도  
결정이 없는 한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관의 금지로 인해 보장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법률적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고문 기타 강압에 의한 자백은 법정에  
시 중기로 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다. 「法대로」라면 불법구금을 당하  
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전혀 없다.  
아무리 겁나는 수사기관에 붙잡혀 가  
더라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법관  
의 영장을 제시받고 빈호인과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목비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다루이지 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  
회이다. 명관만은 수사기관과 달리  
파 암실에 따라 나를 재판할 것이며,  
내정에서 고문받지 않을 것 만큼은 문  
명한 상식이다. 게다가 가족과 만나  
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니!

임명·법정·애사·그 내용까지 인정하여  
아내·정증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제3-1-2조 제2항)·본인이 작성하여  
한 친술서(이른바 자술서)는 본인의 법  
정·진술에 의하여 그 자필서명 사실이  
증명되고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날짜·장소·한국·이전·때에는 증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제3-4  
조 제1항 본문).

미라서 경찰에 시의 강압수사 후에  
는 반드시라고 헐 정도로 자술서를 작  
성시키는 관행이 세워지게 되었다.  
피의자신문조사는 법정부인만으로 종  
기능력을 잃지만, 자술시만큼은 만일  
어찌어찌해서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이전」 것이라고 판단받을  
때에는 법정증거로 유효하게 되기 때  
문이 있다. 에 친대 검찰에서도 어찌이  
써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다면 그와  
동일 내용의 경찰에 시의 자술서가  
「신팅」 할 만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  
어. 결국 자술서의 강요를 통하여 유  
죄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  
이 문재가 金詩勤씨자전에서 쟁점  
으로 부각되었다. 그는 땅백 헌 무죄  
인데 고문때문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  
는 자술서를 써냈으니, 이 증기서류

아  
닌  
가

민일 고문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아니 한번이라도 체포나 연행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자기의 삶이 사방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꼴 저 쟁기를 눈으로 본다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위안감과 신뢰감이 얼마나 높 물걸도록 고마운 것인지를 축출할 수

하여 차례를 맡고 6시간 후에 치안관  
사 면전으로 테러간 경우에까지 불법  
구금 중의 자백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정도이다. 시도의 경우는 체포된다  
유날의 종료시까지 법관의 구속심사  
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민일 고문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본 사람이라도 체포나 연행을 당해  
진이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공  
적 총기를 눈으로 본다는 사실이 가지  
다 주는 위안감과 신뢰감이 얼마나 높  
불길도 봐고 마운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민주재  
도를 수호하고 화충하고자 하는 본질  
적이고도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존엄  
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  
고, 법질차에 따르지 않는 어하한 불  
이의도 말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 할 뿐이라도 체포나 연행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자기의 사

보다  
친리고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이 일발

金詩動씨사진에 있어서의 월 14 일자 대법원 82년 9월  
시 다수의견과 진원합의제 판결에  
논쟁을 벌었다. 소수의견은 의미깊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

를 이떻게 판단하는가 크게 문제된 것이다. 실제로 자술시의 증기능력 문제에 관하여 회기적 전기를 세울 절호의 기회 있다. 기이이 대명원의 13인 진원 학의체는 10인의 다수의 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증기능력에 있어서 지사각성의 되 의자신문조서보다 검사 이의의 수 차기판 나경의

시가 부족한 조사의 흐름을 조사에  
임기한 요건을 요구한 퇴자는 검사  
이 외의 수사관의 폐의자신문에 있  
이 있을지도 모르는 기본적 인권보  
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임법정책  
적 고리라고 할 것이다.<sup>1)</sup>

여 볼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진술내용을 진술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케 하여 재출판 경우에 위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는 피의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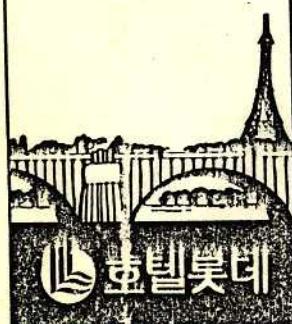
조서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제2항에 따라 결정할 것  
이고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  
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야 할 것으로 본다.(즉 법정에서 내

卷之三

롯데의 名所(X)

Lea Seine  
韓, 中, 日食과 洋食을  
명라한 最高級  
부페 레스토랑.  
불갈비, 성선회, 텅수육,  
새우튀김, 양고기구이 등  
세계 각국의 진미  
70여종을  
마련하였읍니다.  
서울의 全景을 한눈에  
굽이 보면서  
최고급 부페를 즐기십시오.

- **価格** : 深夜 ₩15,000  
                  深夜 ₩17,000
- **予約** : 전화 771-10  
                  고화 047/8



영장의 집행을 막아 같은 날 14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것으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실제로는 영장 발부일  
이 전인 1985.9.4 ○○경찰서  
○ 닌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기  
속 구금상태에 있다가 같은 날 25일  
에야 비로소 구속영장상의 장소인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던  
것이므로 적이도 1985.9.4 부  
터 같은 달 24일까지는 불법으로 구  
금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뿐만 아  
니라 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  
안 이리 차례에 걸쳐 잔혹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도 가족들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민  
호인과의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민호  
인의 조력을 믿을 권리가 침해된 상  
태에서 불법구금과 잔혹한 고문에  
의하여 이루 이진이 사건 경찰수사  
는 단순한 위법의 정도를 넘어서 그  
자체 밀려대에 당한다 할 것이고  
그리hen 면죄지 위법수사의 노일때  
인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그 실체  
적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인진옹  
호의 충만에시 형사소송법 제32  
7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  
기각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  
다.

사증가법처상의 구제제도  
제도、수사편리에 대한 형법상의  
치벌과 징계、손해배상제도 등 다  
른 절차에 의한 어제방법이 있는 현  
대제하에서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는 위 제도들만으로는 미흡하다라  
도 실에서 현실법집이라는 려시소  
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념을 완  
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위법수사에  
藉하였다는데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  
기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성  
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실정법  
상으로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각호는 공소기각 사유  
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풀  
이 되는 바、돈지가 지지하는 위 각  
자 유들은 위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아니함이 법문상 뚜렷하니：공

삼스럽게 「임의의 자술서」까지 받아 두는 폐습이 균절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3인의 대내원 팔사는 유파 같은 소수의 전으로 써 억시 문리 해석을 고집하였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치별하지 않는 것이 형사 소송의 이상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범인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이 추구하야 할 궁극적 목표의 하나라면, 악용의 우리나라 허니의 현실적 기능 성 때문에 그 전부를 부인하고 그 속에 담기진 진실을 포기하고 어떤 할 수는 없다. : 그 결과는 범인을 알고 놓아 주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리는 목표아니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에 맡겨진 것이며, 그렇다면 이를 제야하는 제한은 그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상적임은 이론의 어지가 있을 수 없다.  
다. 최소한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부어된 증거능력을 다시 해석에의하여 부정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 유심증주의에서 법정증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외롭고 고뇌에 찬 책무를 우리 스스로가 호기하고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이 될 것이다.  
소박한 표현을 떨리면 「있다」는 명문규정을 「없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不該被禁止的言論的人

시울고등법원 86년 7월 4일 선고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이  
는 대법원 86년 9월 23일 전고판결에  
서 그대로 받아들이었다. 다소 길이  
보이더라도 주요 부분만 풀은 그대로  
옮긴다. 참을성을 가지고 읽으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판결의 두 가지 의견은 형사절차의 이념·고문 등 수사기관의 불법과 탈법을 보는 시각에 있어 본질적인 차 이를 도리내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그 귀추를 주목해 보기로 하자.

李炳注  
實錄大河小說

## 〈빨치산의 수기〉

## 현대사의 빠져린 아픔을 형상화한 민족의 대서사시!

해방 전후 현대사의 격동기에 韓民族의 고민이 집중된 부내인 智異山을 배경으로 우물로 부딪치고 고뇌하며 좌절해가던 술한 젊은 미국의 주인공들이 엄어내는 민족의 대하 드라마

\* 전7권/각권3,200원

기린원 715-9106  
716-9479

# 중국혁명노래

아그네스  
스베들리  
신경림  
518면 / 5,000원

미국의 가난한 소작농의 땅로 태어나 빙빙하다가 아시아의 중국혁명에 강한 관심을 갖고 모태동의 홍군에 종군, 그 생생한 모습을 세계에 전했던 이류 저널리스트, 1941~1963년까지 2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혁명의 반세기에 걸친 투쟁, 그 기원과 발전과정을 서사 시적으로 조감하고 포괄적 으로 서술한 현대 중국의 기원을 팀구한 책이다. 중국을 지배하는 중세적인 봉건전제, 중국을 침략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 최저의 식주미지 어려운 중국민중의 모금을 자신의 인생과 밀착된 피어린 체험으로 승화시키 묘사한 소설이상의 책이다.

思社研

784-5735 5736, 5737

며, 경찰관의 적애시 파면되는 정치분을 받았으며, 그동안 비등한 어른과 피의 사실로 인하여 형벌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이 가고, 이 사건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인권침해사례가 그칠ばかり입니다.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키다람경 자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일 반에 방직효과도 상당히 기두 있다 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진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결국은 불법수사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은 민사소송을 하여 위자료나 받는 테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고문, 불법구금, 구속절차의 부적법, 피의자인권의 치명적 해손 등을

근절할 방도는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 이러한 불법수사를 근절시키면 범인을 놓치게 되어서 과연 법질서까지 위태로워지는가.

희기적 개선은 과연 불가능한가

법을 세우리면 정의와 평등을 약 한다. 법률에 명자하거나 법적 권리만을 내세운은 자칫 법률을 죽이고 폭력을 키우게 된다. 결국 법질서가 무너진다. 불법수사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부권력의 자발적 노력도 소중하겠으나, 인론의 비판검증기능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은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불법구금과 고문의 하생자는 사실상에서 베제시 쿠즈 아니하민과 사법과 아울러 사법의 통제기능이 매우 긴 대로이다.

만일 이따한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의 수사과정이 사소하고 우연지인 불법이 개재된 정도가 아니라 수다하고 의도적인 불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리기보다는 차라리 악의 열매에 가능하다. 이 드디어 사법의 실탄대 상에서 베제시 쿠즈 아니하민과 사법과 아울러 사법의 통제기능이 매우 긴 대로이다.

불법은 소수자 보호를 통하여 사회

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실체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불법수사에 응징은 없어

위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불법구금과 구속절차의 불법, 고문, 접전금지 등의 불법절차는 확실한 악이 고 억지되어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 게 균절될 수 있는가. 절차의 불법이 증거 내용에 까지 명백한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소하다. 법관의 영장을 보지 못하였다든가,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장소에 구금되어 있었다든지, 번호인은 키녕 가족이라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해서 어떤 전술의 구체적 내용에 직접 영향이 있었다고 입증할 방법은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기법 문제이다. 하기야 한 일 합섬 이사, 金根祖씨를 고문하여 처사시킨 경찰관 들은 쇠고랑을 맡았다. 그리고는 별 우리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이 없다. 사람이 무참히 죽기까지 해야 만 한다면 진정 혹독한 현실이다. 대한 번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金根祖 86년 10월 31일자 서울고등법원의 勸씨, 金權泰씨에 대한 고문경찰관들 정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사를 보이준다.

진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富川경찰서 性고문사건 재정신청 결을 고발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수사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當川경찰서 性고문사건 재정신청 결정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사를 보이준다.

이 형사피의자를 위협하고 특히 어주시면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엄파 가치를 근본 규범으로 하는 자

『살피진대 우리 헌법 제9조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 규범으로 하는 자』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이 형사피의자를 위협하고 특히 어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 사건 범행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처음에는 왕강히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

## 카페 가데니아

Café  
GARDENIA

正統韓食 부페 食堂.  
갈비구이, 산적, 문어회,  
우선편육 등  
최고급 한식 요리  
60여종을 맹리한  
순수 한식요리 부페 食堂.  
회식을 위한 別室도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오시면  
예쁜 기념품도 드립니다.

•価格 : 점심 ₩ 14,000  
저녁 ₩ 16,000  
•予約 : 전화 771-10  
교환 064

호텔롯데

마땅히 국민의 저항의 원리에 따라 개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대한 인권도 개인 내지 사회의 범위를 침해하는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고 필요 최소한도까지는 오직 저명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아니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과 정당한 법률 이 정한 저정절차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발동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하여 일부들이 현 경우 서대문 감시수사권을 남용하여 적내의 히울 밀에서 권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곧 불법수사이다. 이러한 불법수사는 이미 한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당해 수사기관은 응당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보다 더욱 심한 권리의 항포가 바로 無法搜查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라기 보다는 수사활동 자체가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률이 국가 존립

고문 등은 수사기관의 권리남용이 아니라 무법행위이다. 이것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은 증기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요청이다.

### 강제수사권의 한계

의미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미린 한 개인 장치를 파괴하던 시까지 적나라 한 힘이 난무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 사태가 면밀하는 경우에 속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의 최대 치부를 보이는 것이고 아민국가로의 뒤보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전자 즉 불법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구속의 낙용을 들 수 있고, 후자 즉 무벌수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는 고문행위를 들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주로 수사단계에서 발생한다. 동시에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밀성의 요청 때문에 그 권력이 난용되어 제3자에게 수사 공개가 불허되고 심지어는 민호인과 피의자의 가족들과 도 절단된 상태에서 수사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게다가 강제성·기동성이 요청된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 즉 법의 저정절차가 조명되지 않아 「암호의 개복」을 반복해 하기도 한다. 중기인 멸을 방지하고 또 공판정에 시의 신체보호를 위한다는 형식적 이유로 피의자인은 폐는 구속되어 사실상 뒤 조의 재채로 취급된다. 신체구속만으로도 강력하고 충임한 고통인데 그의 진술을 강요하는 각종 의 물리적 제재가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그 결과 유체적 신체적 어인상 테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유죄의 코너로 몰려가 된다.



# 拷問搜查, 人權 최대의 敵

## 車 鋪 碩

(漢陽大法大教授·刑事法)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신체자유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장상황은 그 사회의 문명수준의 바로미터라고들 한다. 노에 와 자유인과의 구별표지는 바로 신체의 자유의 존부 및 그 보장정도에 있다. 재산의 자유, 정신의 자유 등 기타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모든 인권은 신체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그 보장이 가능하고 또 의미 있게 된다.

오늘날의 문명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떠한 국가권력으로 시도 또 국가의 안보마저 포함한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들고, 그를 기초로 하여 기타의 모든 인권을 고도로 보장함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 그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 필수적인 인권보장을 이루하지 못한 국가는 그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며, 따라서 그 리한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은 무의미 하다. 동시에 그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의 형태도

무대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국가권력의 물리적 강제는 모든 사회통제방법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 *(Ultima ratio)*이어야 한다. 물리적 강제의 상용은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강제력의 일반적 효과의 강쇠, 나아가서 점점 보다 큰 물리적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형벌을 통한 물리적 강제력에의 한 지배가常態화된다는 것은 권리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회라도 올바른 방향의 질서유지는 권리의 대상인 국민의 그에 대한 정통 성의식에 의존해야 하고, 또 그의식의 핵심은 국민의 진신에서의 동의 내지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도 그러한 한계를 의식한 발동이 이야 한다.

구속영장제도의 의의

기본권의 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권은 수사권의 과잉 대처남용을 이제 하이 피의자의 정당한 신체

사회 태도된 것으로써, 수사기관의 장에게 합의하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그 일부의 구체적 조건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사인이 그려한 일반적 어제조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 유로 형성되는 형식으로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의식한 만한 상당한 필요로 하고, 또 구속할 「필요성」의 요건(동201조 1항 70조 1항 및 2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격한 조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관의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그 제한이 허용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적 의리를 치니고 있다. 실제법상으로 최첨단정주의에 의하여 형벌권 발동 요인이 임격히 제한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한 의미가 형사절차상으로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카인이 아니다.

영장제도는 미국법의 영향 아래에서 체택된 것으로써, 수사기관의 장에게 합의하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그 일부의 구체적 조건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사인이 그려한 일반적 어제조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 유로 형성되는 형식으로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의식한 만한 상당한 필요로 하고, 또 구속할 「필요성」의 요건(동201조 1항 70조 1항 및 2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

하여 공권력 발동 일반에 요청되는 「비교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리」에 따라 구속의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상의 제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양심에 따르되, 재판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구속으로의 징증형성을 국민에게 날득시킬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구속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무죄추정」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영장내용과 그 집행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의 특정한 조건을 붙여 수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경찰력의 비약적 증강과 경찰활동의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구속이 정자적 의도에서 치정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의미를 제일 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대량구속체제의 확립과 같은 느낌을 주는 학급의 동향은 대량구속 대량 기소 그리고 체벌주의의 한 치안유지를 위하여 신체구속이 활용되는 듯

하다.

동시에 개인의 재판동향도 인권옹호의 관점을 헌저히 악하시겠기나 또는 포기하여 검찰 경찰 등의 치안유지 요구에 종속하여 유착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인권보장의 보루라고 할 법원의 본래적 기능은 소실되어 바라서 재판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느낌이 들판이다. 구속영장의 발부 행위도 일종의 법원의 결정이나, 개인의 재판이 기관의 일방적인 소명자료에 의하여 내리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구속결정은 단기자유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나 기의 다른 바 없다. 따라서 실정법상으로는 당시자의

구두민문을 길지 않고 형소법 37조 2항) 검사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시

민재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형벌을 신고하는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기의 유죄설증형성에 가능한 증명에 이를 때까지 수사기관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생각된다.

비밀영장이라는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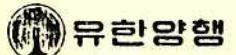
또 최근에는 실무상 비밀영장의 신청발부라는 관행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비밀적으로 구속영장을 끌어온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 사실 등이 개인의 영장발부대장에 일부되고 있는 현황에서 볼 때에는 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사로부터 청구된 구속요청결정수의 거의 94%가 1985년의 「사법연감」 284면에 기재되고 있는 형황에서 볼 때에는 영장청구사안에 관한 개인은 재판기능을 기의 포기하고 종속적인 영장시명기판지 역할(Rubber stamp)을 하고 있다. 평을 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 간해독포은물론 회복까지

해독 회복간장약  
**리카바**

• 100g / 27,000원



유한양행



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또 는 국가배상법 내지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권리, 불이익전술 기부권, 강제재자백의 권리, 증거능력의 부인, 자백만으로써 유죄 인정의 금지, 성장에 의해시민 강제

치분 가동성 및 민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이 많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문의 절대적 금기를 명시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관하고 한 기사가 종종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고문을 이유로 자폐의 증기능력을 내지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개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단속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문이라는 「범죄」가 20세기 최후반의 오늘에 와서도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왜 고문이 했해지는가

그 고문의 빛발성 외에도 최근에 와서 그 의미가 절적으로 상이한 고문이 가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  
쪽대 그구야라고 흐미에는 주도 범죄수사 과정에서 범인과 증거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켜왔다. 즉 사내지 고문이다.  
그러나 중세 내지 균세 초두의 통진 사회 내지 전대 진제 군주 사회에서 그 리고 나찌 시대나 식민지 통치 시대에는 이교도·점치법 및 이민족 등에 대한 종교적·정치적 보복으로서 또는 통

— 그래서 헤태우유는 좋지만  
가장으로 마시는 우유는 천재 신선해  
야 합니다. 헤태우유는 신선도 재일주의  
로 인제나 신선한 우유를 목장에서 가정  
까지 공급합니다.

총  
습  
지  
다



처의 수단으로서, 만대의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고문이 가하여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정치적 고문이라고 한다.

비록 정치적 고문이 아니고 사법적 고문이라 하더라도 고문은 그것이 행하여질 수 있는 풍토에서 그 어진이 차이 진다. 스사카리나 정보주정관리들은 자백회들을 위하여 고문도 불사하거나, 고문 정도는 극히 당연한 관행시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기기애다가 종수죄 기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밀실범죄」에서 는 자백의 증거가치를 높이 여기기 때문에 자백강요에 호소하게 된다. 또 권력체제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고문에 호소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는 수사풍조가 만연되는 것은 말 할 필요조차 없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기술상 수사관 내지 정보관리와 피의자가 단독대좌 한 밀실에서 행하여지는 고문이라는 불법의 존재는 그 일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고문을 보다 부채질한 다. 소송법상 기증책임을 감사에게 있다고 하니 증거제출의 부담을 피고 인이 자게 되고, 또 소송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소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해서 고문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 대원에게 보다 용이하다는 것도 고문의 배 양원인이 된다.

개다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법리가 고문을 간접으로 종용하는 걸

여태까지 자의 대법원 판례와 사법경찰관의 신문서에 고문 등이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또한 피의자가 직접 자술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건, 수사관이 그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이건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검사 앞에서의 피의자 의 자백은 경찰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속된 상황 아래에서 행해지거나 검사총에서 고문 등을 행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을 취하기 시작한 듯だが,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신빙성과도 그리한 관점에서 부인하려는 듯하다.

그리나 대법원의 태도에는 피의자 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이 고문 등

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의심이 생긴 경우, 일관하여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인지, 중명력을 부인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또 설령 전자의 경우라도 그것을 배제하는 이유가 「의성의 의심스러운 상황 아래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허위가 들이 갈우려」가 있다는 취지인지, 수사기관의 고문 등의 위법행위 때문에 자백을 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취지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고문을 보나 철저히 철폐하려는 의도라면 고문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중명력이 아니고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취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 이 경우에도 고문 등의 의심이 있어 진실성이 있으면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허위배제설의 관점에서 카이고, 고문 등의 의심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위법은 용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담은 위법배제설의 관점을 취하여 타당하다. 근자에 와서 대법원의 태도는 자백을 둘러싼 인권옹호의 방향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지만, 보다 대단하게 위법배제설로 도약했으면 하는 것이다.

과를 냉는다. 미국법에서 발전된 소위 「毒樹의 果實理論」(Doctrine of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즉 고문과 같은 불법에서 얻어 진 증거로부터 얻게 된 제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법실정도 고문을 죄진하는 원인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반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문에 의한 증거는 압수물이 고문에 의한 자살무에서는 유죄증거로 사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으로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에 의기하여 획득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가 자백획득을 목적으로 고문이 가하여 절 소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대륙내의 犯人逼問의 실체적 진실주의 및 진진주의 소송관의 유물에 기인한다. 그러나 고문의 규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본적 요청이며 형사절차의 대원칙이다. 고문은 헌행·한법·전시 및 세계적인 물결국 규

법에서는 이하한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치벌을 위한 전설발전은 법의 정정절차의 보장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의 법적 능력을 허용한다.

민족 고문금지 및 그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이라는 현법 및 혁소법의 정신과 취지는 유명무실화한다. 형법 및 특가법 등에서 고문한 자는 엄벌을 받게 돼 있고 또 행정법상 중징계를 받아야만 할 것인데 법적 재판을 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 도 권력주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며, 이것 또한 고문풍토의 배양원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문방지·억제책

형사사법의 민주화요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안전보장이라고 할 때, 고문은 인권 중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신체권을 면밀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형사절차에 대한 최대의 독소

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형사재판의 실재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과정인 대체로 무엇인가. 첫째는 수사·정보수집의 과학화를 들 수 있다. 수사의 과학화란 장비의 과학화, 민주성의 巧鍾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사 조작의 과학적 효율화, 수사의 과학화에 의해서 자백편중의 폐단은 지양될 것이고 자백채취를 위한 고문도 김 소될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 과학화는 범이론이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상의 문제다. 둘째, 수사·정보수집 관리들의 헌법 및 혁소법이념에 투철하고자 하는 민주적 자질의 향상이다. 헌법과 형법의 정정절차의 보장이념을 범인필벌적 진실주의보다 우선시키고 있다. 법의 정정절차의 보장 및 무죄추정의 권리 향유하는 피의자에게는 고문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일이 있다면 한 사람

의 무고한 사람을 치밀해시는 악된 다는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비집 행의 최고 규범이라는 정신을 관계관료에게 고취시키는 과제가 중요하다. 즉 민주적 수사관을 고취시키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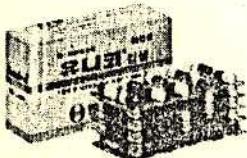
세계·위법하게 수집한 증기는 이내한 것이라도 증거로서 사용해서는 안 제한다는 기본원리를 사법관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기제가 또한 중요하다. 증거법의 말달과정에서 불법 제정기주의 시대에 고문이 가장 성행하였고, 자유심증에 따른 진실주의가 저해하는 때에는 그것이 폐지·감소되는 길을 걸었다.

우리가 저해하는 때에는 그것이 폐지·감소되는 길을 걸었다. 고문 등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아니라 무권한·무법행위이다. 이것 자체 효과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식의 정체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에 열중한 나머지 그와 같은 위법을 허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에 열려는 경계이어야 한다.

네째, 앞서 논한 것처럼 우리의 대법원도 최근에 와서 인권존중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남용된 권한에 대해서는 보다 대단하게 엄정한 철퇴를 가하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주의라는 형이상학적 실은 발전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태도를 지향하길 바란다. 이것이 사법부에게 일침할 것이다. 「법률은 정권의 실현에 철저하기만 하면 진실은 발전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태도를 지향하길 바란다. 이것이 사법부에게 일침할 것이다.」

불안한 중년기 건강에 자신을 고혈압·동맥경화·뇌졸중

유니코



- 혈관강화 및 혈류대사를 촉진
-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
- 순환기 장애개선

한국제약  
유니코

3 환일 葡萄品



사법혁명시대<sup>1</sup>라고 할 만큼 피의자  
의 권리보장이 확충되었다. 마라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방침이  
철저히 화려되었다. 고문에 의한 전  
술은,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가하여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서 우이적 것을 포함하여 인구  
보장을 위한 유형적인 절차를 위반하  
여 일어진 것이라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무기관의 위법익  
제라는 관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정부가 그 스스로의 손에 의해 시  
는 이미 한 사소한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이주어 국가를 가  
장 훌륭한 문화적 존재로 기상시키려  
는 노력을 여기에서 간취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형사전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고·내적·질차의 조명이 미흡한 소위 「암흑의 계곡」이라고 불리울 수사단계를 오늘 날처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문명된 사회가 취하여야 할 윤리적 태도의 표명이 아니

불법, 대접행상의 불법 등의 잔재현상을 제기하는 과제와 함께, 국민의 의식구조상에 정착해 있는 불법 내지 무법상태를 씻어버리고 전진한 법의 척으로 무장하는 과제도 중요시된다. 절대군주정치 및 외세에 의한 강권 정치 아래에서 헌법법(憲法法)·헌법의 독립화를, 권리의 확장에 대하여 지향력을 잃은 예속근성 및 권리·의무·의식의 결여 등을 시급히 청산해야 할 국민적 과제이다.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에 대한 불법의식과 대결하면 서 다른 한편 모든 사회악과 불법에 대한 끊임없는 내민적 싸움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정의사회를 구축한다는 명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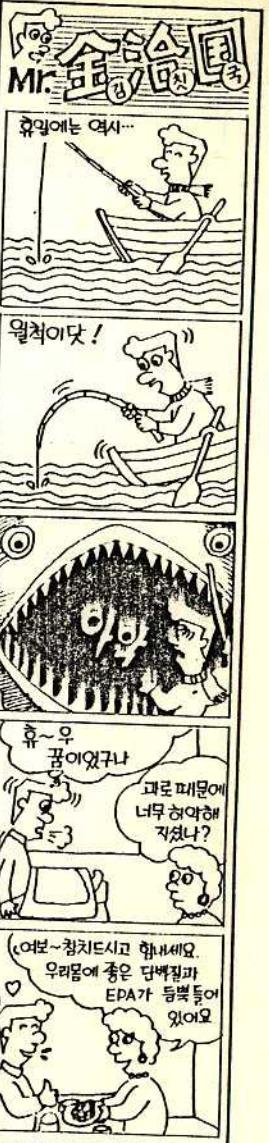
과시하여야만 고문 등의 불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섯째, 절대 권력에 순종하는 원리 아래에서 있을 범한 권리와 사법권의 유착 혐성의 해소가 고문 등을 철폐하도록 사법부에 기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수사과정에 있어서 민호인의 퇴진의 필수화는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효율적 방안이다. 피의자 신문과정 및 기타 수사과정에 민호인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위법수사를 억제 기능을 다하게 하여 위법수사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민호는 배제된다고 한다면 위법수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 데에 불구 속수 사원처 및 무죄의 주정비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구 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보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문 등의 위법을 억제하는 효율적 방안임은 강조 할 필요도 있다.

다 하더라도 이 저상에서 영구히 말살  
되어야 할 것이다.

잔인한 고문에 의하여 범죄가 발견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  
암아 느끼게 되는 공포와 무고한 자의  
치벌 및 보편적 인권의 유린풍조 보다  
는 범죄인과 함께 사는 사회가 보다  
바람직하다. 위법한 수사 내지 관권  
의 억제로써 당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는 관점은 물론이고, 이기에도 덧붙여  
정부의 濑潔性 및 세개직 문명수준에  
안 맞게끔 그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  
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도 종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법수사 억제의 요청의 강도  
는 기의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민권운동의 혁신기를 맞아 소비자 경



EPA: 할애증의 클래스 대를 농도를  
정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불포화 지방산  
간이의 노하를 방지하므로 성인병을  
방해 줍니다.

편시랑, 참치시랑 —  
**동원참치**

고문을 당해 본 사람치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신체 여건에 따라 고문의 강도와 지속도에 따라 종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문은 예외없이 사자(死者)나 병자를 만들어낸다. 서울대朴鍾哲군이나 한일합성 이사 金根祖씨는 고문 도중 목숨을 잃은 경우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부지한 채 고문실에서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은 휴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악몽의 터널은 고문을 받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고문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물통만 보면 구역질을 해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는 이도 있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 도전기고문의 기억이 되살아나 깜짝깜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는 이도 있다 고한다.

고분은 비단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죄인이 됐다는 허울을 받아 물져 누운 어머니들이 있으며 사위가 「살인자」라는 소식을 듣고는 시

고문 희생자는 올기있는 사람들

고문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경우는 역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고문 현장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고문과 있는지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

나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살펴볼 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김기철씨 1967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군하군 살해사건의 「제2대 징범」 중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가 1심에서 사형, 항소심·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4백 47일만에 출소했다.

### 제도적 폭력」에 올辱문 안식하자

그동시로 암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장모도 있다.

기로 1월 부산점검군 고문처사 사건을 계

회, 2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고문사례 보고회 등에서 터져나온 「나

의 고문 경험」들이 이들의 의리를 잘

대변해 준다. 「고문과 조작」을 입증하

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경주당구장 여

주인 피살사건의 주인공 朴虎泳씨는 개

인적인 고문후방울onga로 변신했다.

형사방출신인朴씨는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고문 얘기를 듣고 어려화하는 데 애쓰

고 있다.

고문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경우는 역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고문

현장에서 죽지 않는다는



作 ⑥ 様 유종 製作 間接 様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을

金柱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기자

9 3 8년 생。 69년 7월 26일 대구교도소를 나와 정식 혼인도 못하고 1980년 3월 15일 사망하기까지 그의 여생은 살다기 보다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근하군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뿐된 것은 「법에 복수하겠다.」는 앙심을 품은 친구 때문이었다. 그 친구는 근하군 사건을 잘 알고 있다며 검사를 만나 연극을 피웠고 공범으로 김기철씨 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게 겁찰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은 김기철씨는 완강히 「법행」을 부인했다. 무지개 향상했다.  
막지 한 고문수사를 당해서도 그는 한 번도 굽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몸은 더욱

동거 5년에 소생없이 헤어져

출소 이후 김기철씨의 체력은 눈에 띠게 떨어졌다. 목의 근육이 비틀어지고 뻣뻣해져 마음대로 돌리기가 힘들었다. 목을 젖히려면 웃몸 전체를 젖혀야 했다. 「삼촌이 휴가 나오면 굳은 팔뚝에 매달려 터걸이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센 힘이 퍼지더군

「物語이나 心譖가는」 죽이면

10월 유신대 신민당 울산울주 지역  
당 부위원장을 지낸 정계석씨도 주위에  
서는 고문후유증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당시의 지구당 위원장  
崔炯佑씨에 따르면 朴正熙 정권은 10월  
유신이 있었던 그 이튿날 신민당지구당  
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비라를  
살포했다고 지구당 간부들을 대거 연행  
해 갔다. 배후로 지목된 崔씨를 비롯해  
정계석·김기홍·이영채·조덕규·씨 등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실행을  
살고 나왔다. 그러나 정계석씨만큼은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전

정계석씨는 원래 폐병의 전력이 있었다. 어릴 때 늑마염을 앓아 허리뼈가 시원치 않은 편이었나고 한다. 그런 사람이 구타, 전기고문 등을 받고 나서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출소 한 뒤에 「가슴이 뉘우치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기철씨처럼 그도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기침을 해댔고 한번 시 표했다 하면 20분 30분 씩 계속했다.

崔씨의 기억에 의하면 1916년 어느 날 정씨는 점 못미쳐 있는 가게에서 사이다를 마시다 말고 잡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그의 나이 42세였다.

경기도 시흥군 농협 청계분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풀려나 사망한 李泰成씨(당시 38세)도 고문 치사의 가능성 큰 사람이다. 이 사건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형 확정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있는 崔在萬씨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이 미 여러 차례 기사화 되었으므로 사건 개요는 생략하고 李씨의 사망 관련 부분만 보기로 하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1년 2월 6일 밤에서 7일 새벽 사이, 무기형이 확정된 것은 82년 4월 13일이다. 李씨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중 병세가 악화, 혼침 행정지로 바깥에서 치료를 받다가 83년 5월 사망했다. 李씨는 이보다 앞서 배경학 종세를 모이고 있었고 용접공으로 10여년간 일하다가 사기 발생 1년 전에 신병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이 경찰조서에도 나타나 있었다. 하

소이우소여서도 훌륭한  
이거내지 못할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슴의 상처가 너무 커 7개월  
했다. 법정에서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  
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절차, 즉 대법  
원에 상고하면서는 그 이유서에 「한을  
더금고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최후를  
예전한 듯한 말이다. 폐결핵을 앓고 있  
었다는 주장,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을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재판기간  
중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제3자들의  
증언, 이것들과 李泰成씨의 죽음을 관  
련시켜 보면 사인을 둘러싼 의혹은 명

정시적 암박받고 이상옹세 보여

김기철씨의 형 이만씨는 동생의 무죄 확정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무료 변호해 준 변호사의 만류에 가까운 충고도 있었지만 자신은 살아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돈은 또 벌면 된다고 가족들을 진정시켰다. 는 것이다. 이만씨는 고물상을 하고 이

요. 팔씨름을 하자고 풀라 손을 잡아보면 아귀 힘이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 김창식씨의 말이다. 몸만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었다. 초단이었던 그의 바둑 실력도 날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절 때마다 정신집중이 안된다고 투덜댔다.

1972년 무렵 기철씨는 한 여자와 만나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기철씨보다 여섯살이나 나이가 위인 이웃집 과부였다. 그는 범천2동 산동네에 구멍가게를 펴놓고 있던 과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전남편의 소생인 사내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여자는 동거 5년 만에 서울로 이사 간다며 부산을 떠난다. 기철씨가 같이 올라가 살자고 졸랐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두 남녀가 헤어진 이유는 알 길이 없다. 기철씨의 큰 형은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가 차츰 벌어지더라면서 “아마 기철이가 모친 신문을 담하면서 그 것을 못 쓰게 된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다. 아이를 낳아 본 여자와 5년간이나 살았는데 출산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나는 것이다.

경비원 자리도 그만 두었다. 몸이 더 이상 배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드러 누웠다. 몸은 완전히 쇠약해졌다. 밤만 되면 가슴이 쑤신다고 했고, 기침을 자주 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좀처럼 끝날 줄 알았다. 1백 33쯤 떨어진 큰형 집까지 오는데 대여섯번이나 쉬어야 할 정도였다. 혀소리가 자주 새나왔다. 이듬해 봄 그는 병석에서 자주 하던 말처럼 한 번 멎지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술을 거뒀다. 가족들은 50kg밖에 나가지 않은 시체의 비틀어진 목과 내려앉은 이깨를 바로 펴고 엉습을 끊냈다. 이깟 죽지와 가슴 전체에 울긋불긋한 멍 같은 반점이 퍼져 있었다. 밤만 되면 아파서 못견디겠다며 술로 고통을 달랠 했던 바로 그 반점이었다.

# 만성궤양·재발성궤양에 큐란 1개월 단기요법 :

- 1일 1회 또는 2회 간편한 복용
- 2~3일 이내 증상소실
- 1개월 단기치료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표준소매 150mg 60정 49,800원  
20정 16,600원  
300mg 30정 46,500원

제조업자: 일동제약  
판매업자: 일동제약

를 고문한 치안본부 수사관들을 걸어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1심서 「증거 없다」고 기각돼 현재 항소중에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해 놓고 있다.

## 「구치소에 간첩이 있어申告했다」

尹汝連씨(32)의 경우도 李乙鎬씨와 비슷하다. 지난 85년 가을 민청련 사건으로 1년여간 수배를 받아오던尹씨는 86년 11월 3일 경찰에 연행되어 약 10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징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송치됐다.尹씨의 부인 崔경자씨(35)는 교도관들의 폭행 및 징벌 수감, 이에 항의한 단식 등으로

었는데 동생 뒷바라지에 장사고 집안이 고 엉망이 된 상태였다). 어쨌든 이만씨 말마따나 검기철씨는 살아 돌아왔다. 죽지 않은 것만도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고문 후 유증으로 정신 이상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보자.

지난 85년 9월 4일 삼민투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李乙鎬씨(32·민청련 정책실장)는 9월 24일 검찰에 송치될 무렵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인 崔貞順씨(31)에 의해 20일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들은 말도 안되는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李씨는 수사관들로부터 정신적인 압박을 받자 「사람들이 개나 닦데지로 보인다」 「머리가 두개 달린 데다가 나타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켜주니 걱정마라는 황당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정신 이상 증세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부터라고 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李씨는 10여일씩 잠을 자고 대번을 보지 않았다. 속옷을 마구 벗어대고 충을 추기도 했으며 안경을

마구 벗어 던지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李씨는 결국 송치 20일 만에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감정 유치되었고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7개월여 동안 다섯 차례의 감정유치를 받은 끝에 李씨는 이듬해 6월 5일 정신분열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일단 귀가는 했으나 李씨의 증세는 좀체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 누가 오는 것 같다면 괜히 불안해 했고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수사관들이 이 밤늦은 시각에 찾아와 민청련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고 가기도 했다고 李씨는 말했다.

12월 23일 李씨는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재발이 너무 잦았던 것이다. 여기서 부인 崔씨는 의사로부터 「여간 해서는 회복이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만성화된 뒤라 평생을 조심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감정유치된 때와는 용인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고, 바깥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도 있어서 3개월 단에 퇴원했다.

李씨는 요즘 1주일에 한번씩 용인정신병원 강남분원에서 약을 갖다 먹으면 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정서적 안정은 찾았으나 가끔 신의 세계라든가 우주의 변화 등,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다고 崔씨는 얘기했다.

李씨는 재학중 「올A」를 맞을 정도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李씨가 정신질환자가 되면서 崔씨는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 박사」가 됐다고 쓰는 우울을 겪었다. 특히 늘 55년 11월 후에 났다.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서울 구치소에 간첩이 있어 신고하라 왔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崔씨가 2월 11일과 13일 남편을 면회 했을 때 피해망상증세는 현격하게 나타났다.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서울 구치소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는 그들을 간짜고 죽이려고 하기에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나를 정상이다」 「구치소에서 나를 물고문으로 죽이려고 했다. 목욕을 하자고 하길 래 가보니 물이 너무 뜨거웠다. 사형수

들과 함께 목욕시키면서 나를 목졸라 죽이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

崔씨는 남편의 정신분열증세가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먹방』이라고 하는 정벌방에 10여 일씩

갇혀 있었던 것이 더욱 악화시키는 요

인이었다는 것이다. 崔씨는 지난 2월

24일 교도관 5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먹방과 관계된 부

분만 일부 이용해본다.

『내가 감금되었던 방은 0·6 평 정도

크기의 정벌방으로 두 팔과 두 다리를

束缚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자연 광원이라고는 티끌만치

도 새어들지 않는 컵棬한 곳이며 전히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했다.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

할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수시로 취들이 드나든다는 것

이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

서 나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

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

습해온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시달려야 했다. 그 외에서도 교도관

에 세어들지 않는 컵棬한 곳이며 전히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했다.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

할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수시로 취들이 드나든다는 것

이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

서 나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

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

습해온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시달려야 했다. 그 외에서도 교도관

에 세어들지 않는 컵棬한 곳이며 전히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했다.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

할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수시로 취들이 드나든다는 것

이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

서 나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

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

습해온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시달려야 했다. 그 외에서도 교도관

에 세어들지 않는 컵棬한 곳이며 전히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했다.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

할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수시로 취들이 드나든다는 것

이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

서 나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

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

습해온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시달려야 했다. 그 외에서도 교도관

에 세어들지 않는 컵棬한 곳이며 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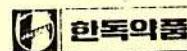
#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헤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헤스탈**  
포르테정

표준소비기준: 100정, 10,000원



철관이 경화되거나 박혔을 때 생기는 통증으로 이따금 급성 심장마비의 원인 이 된다.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의 통증을 느끼는 白씨는 아예 침대 오른쪽 벽에 니트로글리세린 한 병지를 붙여놓고 있다. 통증이 온다고 느끼는 순간 즉각 떼어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또 심장약 「구심」의 상습복용자이기도 하다.

白씨는 1985년 5월 민통련본부에서 있었던 광주사태 5주기 추모농성에서 고문 경험을 다음과 같이 털어놨다. 「이번에는 배를 마구 밟아 죽이는 데 바른쪽, 부근에서 뭔가 으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알(창자)이 바른쪽으

로 불거져 나왔다. 그 다음에는 엎어놓고 치는데 얼마를 치는지 왼쪽 넓적다리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또 바른쪽 새끼손가락 손톱을 쑥 잡아뗐다. 피가 화끈져 나오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 하루도 약 아먹으면 못견뎌

그는 10시간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서 고문 경험을 다음과 같이 털어놨다. 「이번에는 배를 마구 밟아 죽이는 데 바른쪽, 부근에서 뭔가 으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알(창자)이 바른쪽으

로 불거져 나왔다. 그 다음에는 엎어놓고 치는데 얼마를 치는지 왼쪽 넓적다리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또 바른쪽 새끼손가락 손톱을 쑥 잡아뗐다. 피가 화끈져 나오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약풀로 뻗쳤다. 한때는 영하 20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치악산을 내복도 파카도 빙석 겨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비렸다. 현재 입원중인 한대 병원측에서는 무릎 관절만 해도 1~2개월의 입원치료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치료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白씨는 특히 관절염과 혈栓증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혈栓증은 심장마비의

고문은 말 그대로 육체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이다. 「자백」이나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피고문자 가 고문 수사관의 조작 의도에 따라 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문은 계속되고 강도는 높아간다. 어느 고문피해자는 「더 이상 불게 없어서 미치겠더라」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이 있는 친다」

은 오물이 가득찬 변기통을 향해 숨쉬게 하고 취침을 할 때도 변기통에 코를 대게 하고 잠시라도 이탈하면 마구 육체적 구타를 가하였다.尹씨의 피해망상증세는 병원에 있는 산책 시간에도 혼자서는 안 나가려고 요즘도 계속되고 있다. 국선변호사와 한 참 얘기들 나눈뒤에도 부인에게 「저 사람 누구나 고문기도 하고, 정해진 두려워 한다고崔씨는 말하고 있다. 수 입원이 없는尹씨가족은 한 달에 1백 40만 원씩 드는 명원비 마련에도 걱정이 크다고 한다.

7년간 10번 병원에 입원

사실로 될 때까지 고문을 받다 보면 몸이 성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대한변호사 협회나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민가협 등에서 발간된 고문공청회 자료집, 개인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79년의 시국사건으로 모 기관에 끌려 갔던 민통련 부의장 白基完씨는 지금까지 10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白씨의 병명은 무릎관절과 고관절 척추분리증 등으로 인한 척추통증, 의상성 스트레스 중세에 따른 불면증, 합병증으로 발병한 혈栓증 등 10여 개가 넘는다. 부인 金貞淑씨는 그때의 고문이 白씨에 평생의 지병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1년에 두세번 이상씩 고문 후 유증이 재발, 입원과 퇴원은 일년에도 몇 번씩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비렸다. 현재 입원중인 한대 병원측에서는 무릎 관절만 해도 1~2개월의 입원치료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白씨는 특히 관절염과 혈栓증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혈栓증은 심장마비의

7년 전 내란을 모사한 연루되어 모수사기관에 끌려 갔던 權赫忠씨(41)는 지금도 항생제 등 매일 10여 알씩의 약을 먹고 있다. 조사를 받던 중 하복부를 채인 것이 원인이 돼 콩팥이식 수술을 받은 데다 신경통 고혈압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5일간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다 받아 봤다는 權씨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금소를 맞고는 혼절했다. 그 뒤부터는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었는지 소변을 볼 때 배설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피가 섞인 오줌이 나왔다. 3년형을

받고 복역중 權씨는 82년 5월 석가탄 신일 특사로 석방되었다가 83년 초 갑자기 졸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콩팥이식 수술을 받았다.

권씨는 요즘 한 달 약값으로 16만 원씩 지출한다. 그나마 1백만 원 가까이 되던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편이다. 權씨는 옛날보다 뼈마디가 약해진 것 같고 걸음을 걷다 보면 헛발을 디디는 듯 힘이 쭉 빠지는 때가 있다고 한다. 그는 하루도 애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 朴燦鍾의원의 부친상 대 부산에 내려갔다가 미처 약

을 준비해 가지 않아 하룻만에 올라와야 했던 적도 있다.

10월 유신이 단행되던 그날 밤 애당의 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행, 고문이 자행되었다. 朴燦南, 金相賢, 崔炯佑씨 등 8대 신민당 의원 12명은 3년 뒤인 75년 2월 뉴저지 호텔에서 고문폭로 대회를 갖고 「고문정치의 종식」 선언을 표했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에 게 어떤 후유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자.

### 15년 지나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걸어

예비역 준장 출신인 李鍾南의원은 기관에 끌려가 72시간 잠 안재우기,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기,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 등을 당했다. 고문 이유는 왜 장군이 야당에 일당했는가 하는 것과 21년 8월의 실미도 사건 진상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李의원은 수모와 고통을 못이겨 자살하려다가 의치가 부러졌다. 그는 지금도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그 때 부러진 의치를 고문 증거물로 간직하고 있다.

그는 7일만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전신구타의 후유증으로 좌측 대퇴부 꿀결 신경통과 우측 대퇴부 꿀꿀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광이 없이는 보행이 불편한 데다 하루 10~20분씩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또 고문 이후 2, 3년 동안 검은색 지프가 쫓아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崔炯佑의원은 10월 25일 모 수사기관에 끌려가자 마자 구타 세례를 받았다. 물과 묵여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물고문이 가해졌다.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깨어보니 발가벗겨진 채 양손과 발목이 끌려가자마자 구타 세례를 받았다.

때보면 의사가 와서 눈을 뒤집고 혈압을 재보고는 계속해서 되겠다고 했다. 동일한 고문이 여덟번이나 반복됐다. 잠을 재우지 않아 고통이 더 심했고 날씨가 추워 전신이 오들오들 떨려오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정쟁이에는 지금도 거짓말로 반점이 남아 있고 고문은 계절이 돌아오면 주기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고문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대개 그렇겠지만, 그는 10일간의 고문보다는 10년간의 정역

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그는 이때 눈두덩을 얻어 맞은 것이 이곳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허벅지에서 무릎 아래 부분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 위쪽 어깨 뼈 부분을 얼마나 맞았는지 대추 알만한 멍울이 살처럼 붙어 있고, 한 달에 두어 번 씩은 망치로 얻어 맞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李鍾南의원은 10월 21일 모 기관으로 연행되어 8일간 조사를 받았다. 강제로 옷을 벗겨 시멘트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무자별 구타, 실신하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들게 하고는 모포를 몸에 감아 또 때리는 식이었다. 물고문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18회 정도

스낵(2층)

## 다뉴브

DANUBE  
“파스타 요리특선”

정통 이태리식 스파게티, 마카로니 요리 등 파스타의 진미를 즐겨보세요.

- 스파게티 까보나라
- 스파게티 봉고레
- 특제 헤산물술
- 새우와 마카로니 그라탕
- 직진 신태하시는 트롤리 사라다 서비스

예약: 730-9911 (교) 830



코리아나호텔

가장 큰 고문은 의식의 눈물로

으로 일고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맛봤다. 게다가 병원에서의 수술이 잘못되어 아직까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가끔씩 하혈을 한다. 신민당 姜根鎬의원은 10월 23일 용산 구 모 기관에 연행돼 만 6일간 3인 1팀의 고문을 받았다. 작업복에 슬리퍼를 신겨 구타하기, 좁은 방에서 강렬조를 잠안재우기, 충격 승강기에 태우기 등 의 고문을 당했다. 6일 밤낮을 시달리다 보니 환각상태에 빠졌고 마지막에 빠졌다. 링게르와 강심제를 맞고도 깨

몇 가지 중요한 피해를 동반한다. 가령 「범행일체를 자백」해 범인으로 몰렸다. 재판부가 고문 사실을 인정,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그는 법적으로는 무죄임을 입증했지만 과연 사실적으로도 결백함을 증명 받을 수 있을까. 경찰서에 갖다 왔다면 일단 「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단정했고 언론이 이를 크게 뒷받침한 사건일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떨궈내기 힘들다.

김기철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무소에 갖다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되도록 그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 했고, 그도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 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기록과 감방에서 써 둔 두툼한 수기만큼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이 재판 기록들은 나의 결백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기철씨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 「원효로 尹노파 피살사건」의 高淑鍾씨.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일부 형사 검사들은 아직도 高씨를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에서는 재수사를 포기한 지

1974년 긴급조치 4호 발동에 따른 「인현당사건」의 고 河재완씨 가족의 경우는 어떤가. 결백을 입증해 줄 「진범」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인 李英교씨는 지난 2월 민가협이 주최한 「고문사례 보고회」에 나와 「천하를 이기는 힘 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을 달라」며 울먹였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이 난지 24시간도 안돼 남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은 「간첩 집안」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형사들의 감시, 금우들의 따돌림... 지긋지긋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너희 아빠 간첩이지」하는 놀림을 들어야 했고 3살짜리 막내는 새끼에 묶여서 동네 아이

들로부터 총살당하는 놀이를 했다. 동네 어른들은 이를 보고 만류는 키녕 웃고 있었다 하니, 혀를 깨물어 만천하에 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젠 의욕도 욕망도 없고 권태뿐이다. 인현당 8명을 처형한 것이 집권 18년동안 가장 큰 실수였다고朴대통령이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尹潽善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으며 민생학련관연구속자 전원이 정지로 자유를 찾았으니 처형된 분들에 게도 복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불구되고 패가망신해도 보상은...

고문의 후유증에 재산상의 손실이 또 한 빠질 수 없다. 「고문과 조작」이라는 이 시리즈에서 다뤄진 사건, 또는 그밖에도 고문 시비가 잇따른 사건에서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엄청난 재산피해를 봐야 했다.

우선 경주당구장사건을 보자. 朴虎冰 씨는 경찰 생활 16년동안 모은 돈과 선친이 물려준 땅 등 8천만 원 상당의 전 재산을 법정투쟁 비용으로 날려 버렸다. 친지에게 빌어서 생활하다 앓았던 그는 그런 사회 풍조가 이뤄져야 하는 어야 한다.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일당을 채포했다고 하더라도, 고문 사실은 드러나면 그 발표 내용을 불신해 버리는 고문 풍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도 중요하다. 각계각층의 인사와 의사, 최소한 1차 진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고문으로 인한 회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고문을 추방하기 위한 국민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자부인이 병든 몸으로 남의 식당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석방되어 집에 돌아온 남은 돈이라곤 현금 2천원뿐이었더라고 한다.朴씨 역시 허약해진 몸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밥을 먹이기 위해 계란행성 자식들에게 밥을 놓고 차장)도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朴씨 중으로 불구가 됐고, 사업(식당 및 페어까지 나섰었다.朴海善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금기철씨의 형 이만씨가 동생 뒷바라지에 장사가 엄망이 됐다지만, 사정은 한입합섬 金根祖이사의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金이사의 고문처사 사건후 2년만인 1985년 3월 28일 서울민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1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로 낸 「국가는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 송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았으니 국가가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고법에 항소했으나 「이유 없다」며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 없다.

고장 아쉬워하는 것은 사회의 적극적인 보살핌이다. 고문으로 몸이 망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된 것만도 억울한 데 사회의 질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고문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거나 다름이

## 財閥의 嘲諷자들

한국 재벌기업의創業비  
화와人脈 그리고 守成의  
재무를 말은 후에 자들의  
생각과 일들을 조선일보  
경제부 특별취재반이  
엮었다.

朝鮮日報 經濟部 편  
신국판 302쪽  
값 3,800원